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0504-14

<http://kostat.go.kr>

ISSN 2288-4718

2013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활용 사례집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통계청
STATISTICS KOREA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0504-14

2013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활용 사례집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일러두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통계와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통계는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통계기반 정책평가』는 각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필요통계 지표의 구비여부 및 관련 통계의 개발·개선계획에 대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면, 통계청이 이를 검토·조정하는 제도로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8년 제도시행 이듬해인 2009년부터 주요 평가사례를 수립·정리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 부처가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통계를 개발·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활용 사례집」은 통계청이 2013년에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통해 각 부처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권고하였던 주요 사례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2013년에 통계 개발·개선이 완료되어 정책에 활용된 사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업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9월

통계정책국장 김 회 정

차 례 Contents

제1편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 사례집

제1장 개요 및 평가현황

제1절 개요	3
1. 의의 및 목적	3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	4
3. 주요 평가체계 및 절차	4
제2절 2013년 평가현황	9
1. 평가요청 현황	9
2. 평가결과 현황	10

제2장 부처별 주요 사례

제1절 기획재정부	15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제2절 미래창조과학부	21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3
제3절 안전행정부	29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3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5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41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3
제5절	농림축산식품부	47
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9
2.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안	54
제6절	산업통상자원부	59
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	61
제7절	보건복지부	65
1.	의료법 일부개정안	67
제8절	환경부	71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73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77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82
4.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88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94
제9절	여성가족부	99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1
2.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105
제10절	국토교통부	111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113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9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23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7

제11절 해양수산부	131
1.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33
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37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140
제1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1. 약사법 일부개정안	147
제13절 공정거래위원회	151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53
제14절 금융위원회	15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6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66
제15절 소방방재청	173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75
제16절 특허청	181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83

제2편 통계지표 활용실태 및 주요 정책활용 사례집

제1장 개요, 평가현황 및 점검결과

제1절 개요	189
1. 통계지표 활용실태	189
2. 통계정책 활용사례	191

제2절 평가현황 및 점검결과 195

제2장 부처별 통계정책 활용사례

제1절 기획재정부 201

1. 협동조합실태조사203

제2절 미래창조과학부 207

1.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조사209

제3절 교육부 211

1.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213

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216

3. 수석교사 운영실태219

제4절 안전행정부 221

1.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223

2.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225

제5절 문화체육관광부 227

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229

2. 이스포츠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232

제6절 농림축산식품부 235

1.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237

2.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 현황239

제7절 산업통상자원부 241

1. 뿌리산업 관련 통계조사243

제8절 보건복지부	249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현황	251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254
3. 의료분쟁조정·중재 현황	256
4. 자살실태조사	258
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기관 현황	262
제9절 환경부	265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267
2.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실태조사	269
3. 지질공원 현황	271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75
제10절 여성가족부	277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279
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83
제11절 금융위원회	287
1. 전자단기사채 등록현황	289
2. 코넥스시장 현황	292
3.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	294
제12절 산림청	297
1.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99
2.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 통계	302
3.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305
제13절 소방방재청	307
1. 소방산업 통계조사	309

[부 록]

1. 2014년 월별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315
2.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영문)330
3. 통계정보 이용방법337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 편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 사례집

제1장 개요 및 평가현황

- ▣ 제1절 개요
- ▣ 제2절 2013년 평가현황

제1장은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2013년 한 해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1장 개요 및 평가현황

제1절 개요

1 의의 및 목적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수립 및 집행시 다양한 통계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적절한 통계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통계기반 정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일차적으로 각 부처가 스스로 필요한 통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하지만, 동 제도를 통하여 통계청과 각 부처가 필요한 통계를 검토·협약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가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면 통계청은 제·개정되는 법령과 관련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각 부처는 통계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계청과 협의하여 관련 필요통계를 개발·개선한다.

「통계기반 정책평가」는 통계와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

1. 평가 대상기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다.

2. 평가 대상법령

평가대상 법령은 모든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이다.

다만, 법령 내용이 통계가 필요 없거나, 국가안보·행정절차·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등 평가가 부적절한 법령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는 「통계기반 정책평가 지침」을 통해 매년 공지한다.

의원입법은 동 법률의 하위법령 제·개정 시 함께 평가하여 소관기관의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3 주요 평가체계 및 절차

1. 평가체계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관계기관 협의 시 예비평가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동 요청서를 토대로 평가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계 필요성 여부만 검토하는 예비평가와 통계의 필요성을 전제로 통계지표의 구비 및 적합성 여부,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실질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예비평가

예비평가는 제·개정 법령을 통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통계가 필요한지 여부만 평가한다. 각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제·개정 법령의 내용이 통계를 기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입법예고 시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질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서 통계가 필요한 경우는 실질평가를 요청토록 하고, 불필요한 경우는 실질평가 없이 평가절차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평가 결과는 아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① 평가대상 제외법령

해당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제도)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실질평가 면제

해당 법령에 있는 정책(제도)은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하지만, 법령 제·개정 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③ 시행령 입안 시 평가

신속한 입법 또는 정책(제도)의 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④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 (법령 또는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작성·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실질평가 대상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이 통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실질평가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의 핵심 절차로서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적합성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실질평가 결과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① 평가대상 제외법령

해당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제도)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계지표 활용권고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작성·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 통계개발·개선

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에 대하여 통계청과 법령 소관부처 간 이견이 없는 경우이다. 법령 소관부처 제시 의견에 대하여 통계청과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경우, 각 부처는 상세한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통계청에 제시하고, 통계청은 이를 중기 국가통계 개발·개선의 일환으로 관리한다.

④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정책에 필요한 통계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 계획에 대하여 통계청과 법령 소관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개발·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법령 소관부처는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통계청의 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평가절차

1) 평가요청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를 요청할 때, 법령 소관부처의 담당부서는 해당기관 통계책임관 또는 통계 책임관 운영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평가요청서 외에 법령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정책 관련 참고자료(정책용역보고서, 관계기관 협의 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평가결과 통보

통계청은 각 평가에 대하여 예비평가는 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질평가는 입법예고 만료 시 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 한다.

3) 이의제기 및 처리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결과 통보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은 이의제기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예비평가는 7일 이내, 실질 평가는 2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절차 흐름도

1. 예비평가 요청

-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를 통계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 전문 및 제·개정내용, 산·구조문 대비표 등
 - 각 부처 통계책임관 경우 제출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질평가 요청

2.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예비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 활용권고'인 경우에는 입법예고 만료 시까지

3.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제기기간 :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 접수 이후 7일 이내

4. 실질평가 요청

- 제출기간 : 예비평가 결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실질평가 요청서, 통계개발·개선계획 등

5.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처리기한 :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
-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과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

6.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제기기간 :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소관(관계)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상정·심의

7. 평가결과 이행

- 실질평가 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인 경우,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상정 시 통계청장의 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
- 소관기관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제2절 2013년 평가현황

1 평가요청 현황

1. 총괄

2013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요청은 총 684건이며, 그 중 법률 254건(37.1%) 시행령 430건(62.9%)이며, 제정안 50건(법률 23, 시행령 27), 개정안 634건(법률 231, 시행령 403) 이다.



평가요청 총괄 (2013. 12. 31. 현재)

(단위: 건, %)

요청건수 (비중)	법 른		시 행 령		
	제정	개정	제정	개정	
684 (100.0)	254 (37.1)	231	430 (62.9)	27	403

2. 월별 평가요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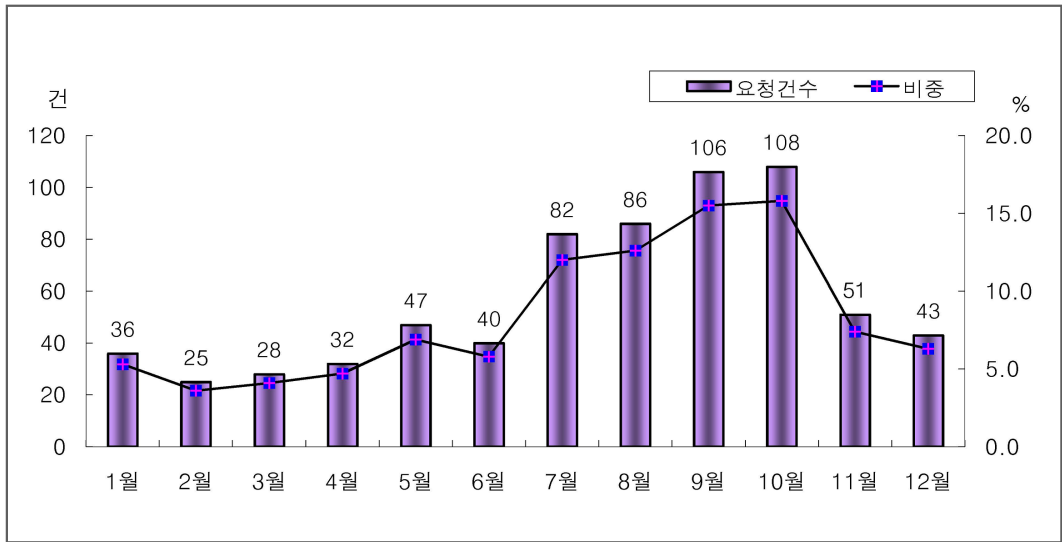
월별 평가요청은 2013년 10월에 108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고, 9월 106건, 8월 86건 순이며, 3개월 동안 평가요청이 전체 요청건수의 43.9%(300건)를 차지하였다. 특히 10월에 평가요청이 전체의 15.8%이다.



월별 평가요청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청건수	684	36	25	28	32	47	40	82	86	106	108	51	43
비중	100.0	5.3	3.6	4.1	4.7	6.9	5.8	12.0	12.6	15.5	15.8	7.4	6.3



2 평가결과 현황

1. 총괄

2013년 총 684건의 평가요청이 있었고, 2012년 이월된 평가요청을 포함하여 681건을 평가 완료하였으며, 평가요청 건수 중 4건은 2014년으로 이월되었다.



평가결과 총괄 (2013. 12. 31 현재)

(단위: 건)

평가요청	'12년에서 이월	'14년으로 이월	평가완료
684	1	4	681

2. 유형별 평가결과 현황

평가 완료된 681건 가운데 예비평가 결과는 474건(69.6%)이고 실질평가 결과는 207건(30.4%)이었다.

예비평가 결과 유형의 경우 실질평가 면제가 427건(90.1%)으로 가장 많았고, 실질평가 결과 유형은 통계지표 활용권고가 177건(85.5%)이다.



유형별 평가결과 현황

(단위: 건, %)

평가완료 (비중)	예 비 평 가			실 질 평 가			
	실질평가 대상	실질평가 면제	기타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 개발·개선		
681 (100.0)	474 (69.6)	22	427	25	207 (30.4)	177	30

3. 평균 평가 소요기간

평가요청서 접수 일로부터 예비평가는 10일, 실질평가는 입법예고 만료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 소요기간은 예비평가 4.9일, 실질평가 5.3일로 동 소요기간을 준수하였다.



평균 평가 소요기간

(단위: 일)

	예비평가	실질평가	평균
평균 평가소요기간	4.9	5.3	5.0

4. 부처별 평가 종합 현황



부처별 평가 종합 현황(2013년)

(단위: 건)

소관 부처	평가 요청	평가 완료	예비평가				실질평가		
			실질 대상	실질 면제	기타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 개발개선		
전 체	684	681	474	22	427	25	207	177	30
국 무 조 정 실	2	2	2	-	1	1	-	-	-
기 획 재 정 부	59	59	49	1	43	5	10	9	1
미래창조과학부	14	14	8	1	6	1	6	5	1
교 육 부	28	28	22	-	22	-	6	6	-
외 교 부	1	1	1	-	1	-	-	-	-
통 일 부	3	3	3	-	2	1	-	-	-
안 전 행 정 부	36	35	27	1	22	4	8	6	2
문화체육관광부	15	15	12	-	11	1	3	2	1
농림축산식품부	34	34	15	2	13	-	19	17	2
산업통상자원부	38	38	22	1	19	2	16	15	1
보 건 복 지 부	42	42	26	1	22	3	16	15	1
환 경 부	61	60	35	5	28	2	25	20	5
고 용 노 동 부	14	14	8	-	8	-	6	6	-
여 성 가 족 부	21	21	13	1	12	-	8	6	2
국 토 교 통 부	138	138	109	3	103	3	29	25	4
해 양 수 산 부	38	36	25	1	24	-	11	8	3
국 가 보 훈 처	8	8	6	-	6	-	2	2	-
식품의약품안전처	13	13	9	-	8	1	4	3	1
방송통신위원회	4	4	3	-	3	-	1	1	-
공정거래위원회	8	8	7	1	6	-	1	-	1
금 융 위 원 회	32	32	25	2	22	1	7	5	2
원자력안전위원회	3	3	1	-	1	-	2	2	-
통 계 청	2	2	2	-	2	-	-	-	-
경 찰 청	5	5	5	-	5	-	-	-	-
소 방 방 재 청	13	13	11	1	10	-	2	1	1
문 화 재 청	3	3	3	-	3	-	-	-	-
농 촌 진 흥 청	2	2	1	-	1	-	1	1	-
산 림 청	11	11	6	-	6	-	5	5	-
중 소 기 업 청	19	20	11	-	11	-	9	9	-
특 허 청	10	10	4	-	4	-	6	5	1
기 상 청	6	6	3	1	2	-	3	2	1
해 양 경 찰 청	1	1	-	-	-	-	1	1	-

제2장 부처별 주요 사례

- ☑ 제 1 절 기획재정부
- ☑ 제 2 절 미래창조과학부
- ☑ 제 3 절 안전행정부
- ☑ 제 4 절 문화체육관광부
- ☑ 제 5 절 농림축산식품부
- ☑ 제 6 절 산업통상자원부
- ☑ 제 7 절 보건복지부
- ☑ 제 8 절 환경부
- ☑ 제 9 절 여성가족부
- ☑ 제10절 국토교통부
- ☑ 제11절 해양수산부
- ☑ 제1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제13절 공정거래위원회
- ☑ 제14절 금융위원회
- ☑ 제15절 소방방재청
- ☑ 제16절 특허청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 절

기획재정부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정 책 (제 도) 명	조달사업의 효율적 관리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11. 19. ~ 2013. 12. 28.
소 관 기 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 및 방법
 -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 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으로 명시하고, 조달청장은 해외진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과 방법 및 절차
 -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게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함



제4조의3(조달통계의 작성) ② 법 제3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1항 각 호의 기관(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전체 실적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로 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의 대상

다.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마. 계약체결의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 지역제한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 여부)

바.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사. 계약의 물량 또는 규모

아. 계약금액

자.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의 물량 또는 규모와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 계약변경의 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기업별·계약방법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자료 제출을 위하여 표준화된 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매월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조달사업의 효율적 관리제도 도입으로 공공조달 통계에 대한 개발개선 계획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통계 - 조달규모·계약 방법별·정부정책별(중소기업 등)·지역별 통계, 낙찰률 등 	통계개발계획 (조달청)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공공조달 통계

- 조사(보고)목적 :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시행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영안 제25조
- 조사(보고)대상 : 공공기관
- 조사(보고)사항
 - 계약사항 정보, 수정계약 정보, 계약대상자 정보, 입찰정보 등

- 작성(보고)주기 : 1개월
- 조사(보고)체계 : 공공기관 → 조달청
 - 나라장터 데이터 분석, 자체조달 시스템 연계 및 수기입력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2014년 1월
 - 조사시기 : 2014년 1월부터 매월
 - 공표시기 : 2015년 1월부터 매월
 - ※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매월 통계로 공표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개발·개선
 - 조달사업의 효율적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제 2 절

미래창조과학부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정책(제도)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입법 예고 기간	2013. 10. 1. ~ 2013. 11. 11.
소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절차 마련 및 전략위원회,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 정보통신융합관련 국내전문인력 및 해외우수인력,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한 한국소프트웨어 종합학교 운영 및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지원

- 기술·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및 품질 인증 지원
 - 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마련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및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 마련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및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 마련

-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내용,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마련함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

- 정보통신 융합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
 -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글로벌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

- 기타 포상, 홍보, 교육, 신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융합 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



참 고

주요 제정안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업종과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관련 기업
3.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제작·판매·배급·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정보통신 융합 환경에 부합한 기술 및 서비스 실태조사 및 다양한 산업을 포괄한 콘텐츠 유통 실태조사의 표본설정과 관련한 통계청의 협조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파악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 사업체 현황(매출액, 종사자 수 등),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 투자현황, 애로사항 등	통계개발개선 (미래창조과학부)
	○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 - 사업체 현황(매출액, 종사자 수 등), 사업 운영 실태 (중사 장르, 온라인/오프라인) 등	통계개발개선 (미래창조과학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1)〉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 조사(보고)목적

유망 정보통신 융합기술·서비스 현황파악 및 분석 자료 수집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영안 제10조 (실태조사 등)
- 조사대상 : 정보통신 융합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체, 연구소, 단체, 기관 등
- 조사방법 : 가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

○ 조사(보고)사항

- 사업체 현황(매출액, 종사자 수 등),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 투자현황, 애로사항 등

○ 작성(보고)주기 : 연 1회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시행 후 '15년 중 실시

〈통계개발 세부계획서(2)〉

□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

○ 조사(보고)목적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유통환경 현황파악 및 산업환경 분석 자료수집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영안 제28조 (실태조사 등)
- 조사대상 : 콘텐츠산업에 종사 중인 사업체
- 조사방법 : 가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

○ 조사(보고)사항

- 사업체 현황(매출액, 종사자 수 등), 사업적 운영 실태(종사 장르, 온라인/오프라인 등), 거래 경로 및 비중(주거래 사업체, 발주/수주비율 등), 유통 구조 상의 문제점 (사업체 간 거래 환경, 불공정거래 발생 비율 등), 콘텐츠 유통 관련 정책(관련 법, 표준계약서 활용, 정책적 대안) 등

○ 작성(보고)주기 : 연 1회

○ 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14년 12월까지 → (현장조사) '15년 연중 → (결과보고) '15년 말까지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 개발·개선 계획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 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3 절

안전행정부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 책 (제 도) 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8. 06. ~ 2013. 09. 16.
소 관 기 관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전체위원(35명 이내)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
 - 전문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기획, 품질·표준화, 법·제도, 이용 활성화의 4개 분야로 구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개년간의 추진성과와 다음 연도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 제출
 -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관련 기관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할 시행계획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기준 등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운영,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실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 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민·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이용현황조사
 - 조사 범위는 공공데이터 이용수요·현황,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 및 인력 현황, 공공데이터 이용 애로사항 등
-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품질진단 등
 -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포털을 관리
 -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해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진단을 실시



참 고

주요 제정안

- 제13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데이터의 이용수요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되는 기술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이용의 애로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

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용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통계지표 마련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 및 현황 -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 및 인력 현황 - 공공데이터 이용 애로사항 등 	통계개발계획 (안전행정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조사

- 조사(보고)목적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 및 현황 자료 수집을 통해 공공 데이터 제공 현황과 민간 수요 데이터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13조
 - 조사대상 :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
- 조사(보고)사항
 - 공공데이터의 이용 수요 및 현황, 기술 및 인력현황, 애로사항 등
- 작성(보고)주기 : 3년(또는 필요시 수시)
- 추진일정 : '14년 하반기 조사 및 결과보고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 통계개발·개선이 필요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정책(제도)명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입법예고기간	2013. 10. 10. ~ 2013. 11. 18.
소관기관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재난예방사업 범위 규정
 -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정 및 재난예방사업의 범위 규정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 구성·운영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차관급 등으로 규정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기능, 회의소집,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주체 명확화
 - 중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되던 재난 유형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주체 구분

-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단”의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단장 및 점검단원을 국무총리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도록 규정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활용
 -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비축·관리계획 수립,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활용
 - 재난대응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정의하고 재난대응 활동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위기관리매뉴얼은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운영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활용
 - 매뉴얼의 승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안전기준의 등록 및 관리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기준 등록을 위한 조사 및 안전기준 심의회를 운영
-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주체 및 기준 명확화
 - 예보·경보의 발령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로 확대 등 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절차 명확화
-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 안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 항목(재난 등의 발생 현황 지표, 재난 등을 유발하는 지표, 재난 등을 경감하는 지표, 국민의 안전의식과 관련된 지표 등) 규정
 - 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로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공표
 - ※ 법 제66조의8 :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공표
-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 운영
 -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조사단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
- 안전책임관 임명 및 운영제도 도입
 - 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규정



참 고

주요 개정안

제73조의9(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① 법 제66조의8제1항의 안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등의 발생 현황 지표
2. 재난 등을 유발하는 지표

- 3. 재난 등을 경감하는 지표
- 4. 국민의 안전의식과 관련된 지표
-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로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수준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안전지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기 공개한 안전 관련 통계를 가공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실질평가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등의 발생 현황 지표 - 재난 등을 유발하는 지표 - 재난 등을 경감하는 지표 - 국민의 안전의식 관련 지표 - 기타 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지표 	통계개발계획 (안전행정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안전지수

- 조사(보고)목적
 -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과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안전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안전 관련 정책에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 조사대상 : 조사 기준 시점 현재의 자치단체별 안전 관련 공적 통계
- 조사(보고)사항
 - 주요 사망원인, 자연재난 피해(풍수해, 화재 등), 범죄피해, 교통사고 피해, 생활 안전사고 피해, 재난 약자(노인, 어린이 등) 현황, 도시화율, 지역별 도로·건축 면적, 재정자립도, 의료인력 및 경찰·소방인력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13년) 지수 산출모형 확정
 - ('14년) 시범산출 및 자치단체 시범적용
 - ('15년) 대국민 공개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 등을 위한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 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 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 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4 절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 책 (제 도) 명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5. 31. ~ 2013. 06. 14.
소 관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 의료호텔업은 의료기관과 1km이내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 의료법상 의료법인 등이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사.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의료호텔업 신설에 따라 해당 관광숙박업의 현황과 이용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측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 시행 후 기존의 국가승인통계인 ‘호텔업운영현황’에 포함조사가 가능하여 향후 통계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호텔업 운영현황 - 의료호텔업 등록 수 -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자 수 등 	통계개발개선 계획 (11307, 호텔업운영현황)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개발개선 세부계획서>

□ 의료호텔업 운영현황

○ 조사(보고)목적

- 의료호텔업 현황 파악 및 의료관광 정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조사대상 : 호텔운영업자
- 조사방법 : ‘호텔업운영현황’(승인11307/문화체육관광부) 변경
 ※ ‘호텔업운영현황’에 의료호텔업 운영현황조사를 추가

- 조사(보고)사항
 - 연도별, 지역별 의료호텔업 등록현황, 연간이용객 수 등
- 작성(보고)주기 : 1년
- 추진일정 : '14.4월까지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의료호텔업 운영현황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5 절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정 책 (제 도) 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품 사업화 촉진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8. 26. ~ 2013. 10. 07.
소 관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 (인증대상)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서 제품의 성능, 생산성 또는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 (평가기준) 선진국 대비 우수하거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품질의 안정성, 인증 지원의 효과 등을 고려
 - (유효기간)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안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신기술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사실을 예고하고, 취소한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및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

- 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지원방안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국내 기술정보 알선·제공,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각종 기금에 의한 금융지원,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 요청 가능
- 전문기관에 위탁한 관리업무 내용 추가
 - 신기술 인증관리업무, 농림수산물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기획·운영·관리업무, 연구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업무 등
- 기술료 감면 대상의 확대 및 기준 세분화
 - 중견기업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감면료 기준 세분화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관련규정 개선
 - 당연직 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한국식품연구원장 추가
 -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임가능토록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연장이 거부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신기술의 인증 대상)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제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제15조의4(신기술의 인증 심사·평가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제15조의5(신기술의 인증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하려는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3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신기술 인증이 거부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 또는 신기술 인증의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농림수산식품분야 과학기술의 혁신 및 고도화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통계와 정책과의 연계 강화, 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 실적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현황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갱신, 취소 현황 - 농업식품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매량(매출액) 등 	통계개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실적

- 조사(보고)목적 : 신기술 인증제 실시효과 측정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법 제12조의2~3(농림수산식품신기술 인증제)
 - 조사대상 : 인증제품 생산업체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보고)사항 : 인증분야별 생산량, 판매량(매출액)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14년 1/4분기 계획수립 및 조사실시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현황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 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2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사업과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농어업 경영안정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
입법예고기간	2013. 09. 12. ~ 2013. 10. 2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등
 - 목적, 용어정의, 보험사업 등의 관장 등
 - (국고의 지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심의회 운영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 심의회에서 다음 사항 심의
 - (심의 내용) 보험사업 등의 기본계획, 보험급여 종류의 선정 및 범위의 결정, 보험료 부과기준, 보험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
 -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또는 안전재해예방사업 전담기관을 각각 설립하거나 지정
 - 보험사업 등의 운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자의 선정 및 약정 체결, 보험사업 등의 관리·감독, 농어작업환경 개선장비 개발 및 보급, 농어업인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및 관리, 농어업인 질환 등 안전재해 통계 생산 및 재해조사·DB구축 등의 업무 수행
- 보험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
- 보험료
 - 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보험료액은 농어업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농작업 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세대단위로 산정
- 보험모집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
 - 보험사업자에게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 보험가입자
 - 농어업인,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그 동거가족
 - 1인 이상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업경영체*의 근로자

*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인 + 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어선어업종사 어업인에 한함), 소지품유실급여(어선어업종사 어업인에 한함)
-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 (농어업작업 사고) 농어업작업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 (농어업작업 업무상 질병)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수급권의 보호
 - 보험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 농어업인 안전재해의 예방
 - 국가는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인 안전재해의 예방·연구사업 등을 수행
- 통계의 수집·관리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참 고

주요 제정안

- 제29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사업현황 및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 사업현황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실적(가입률, 가입자 수, 가입금액) - 지급실적(지급액, 지급건수, 손해율) - 기타 운영실적 등 ○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사업 실적 - 연구사업 실적 	통계개발·개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사업현황

- 조사(보고)목적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사업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에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29조(통계의 수집 및 관리 등)
 - 조사대상 : 보험사업자
- 조사(보고)사항
 - 가입실적(가입률, 가입자수, 가입금액), 지급실적(지급액, 지급건수, 손해율) 기타 운영실적 등
- 작성(보고)주기 : 매월

○ 추진일정

- 법 제정 1년 후 보험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계관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

□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 사업현황

- 조사목적 : 농어업인안전재해예방 사업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예방연구사업의 내실화 도모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29조(통계의 수집 및 관리 등)
 - 조사대상 : 전담기관
- 조사(보고)항목 : 예방사업 실적, 연구사업 실적 등
- 작성(보고)주기 : 반기 1회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법 제정 1년 후 보험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계관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개발 추진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정책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제 6 절

산업통상자원부

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
정책(제도)명	산업표준화 촉진
입법예고기간	2013. 12. 17. ~ 2014. 01. 27.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산업표준 대상범위 명확화
·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명확화
-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
·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
- KS 서비스인증 대상 범위 확대
· 서비스 품질 확보 및 KS 서비스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인증 대상을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서비스인증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구체화
· 운영체제, 인력관리, 시설관리 등

-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 추가
 -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등
- 인증심사원의 자격 갱신 규정 신설
 - 3년 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 갱신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산업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참 고

주요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 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 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의2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의견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표준화비용, 표준 전담인력, 애로사항 등 	통계개발계획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조사목적
 - 표준화 활동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정책 수립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2
- 조사대상
 -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 등
- 조사항목
 - 기업 및 단체의 국가·국제표준화 이용현황, 표준화에 투입되는 비용, 표준 전담인력현황, 애로사항 등 정책수립 시 필요한 사항
- 작성주기 : 매년
- 조사체계 : 국내기업 및 단체 → 한국표준협회 등 → 국가기술표준원
- 추진일정 : 미정
 - 시행일(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산업표준화 촉진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제 7 절

보건복지부

1.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정 책 (제 도) 명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10. 29. ~ 2013. 11. 29.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
 -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격의료 기관을 의원급으로 하고 고혈압·당뇨 환자 등으로 한정
 - 원격의료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
- 원격의료 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医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医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현황에 대한 통계 개발개선 계획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현황 - 시도별·종류별 원격의료기관 수, 종사자수, 병실수, 매출액 등 - 성별·연령별·시도별·종류(관찰·상담·진단·처방)별·질병별 원격의료 환자 수 등 	통계개발개선 계획 (보건복지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현황

- 조사(보고)목적 : 원격의료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시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원격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의료법 제34조
- 조사(보고)대상 : 원격의료 실시 의료기관
- 조사(보고)사항
 - 원격의료 실시기관(지역별·종별 기관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 원격의료 환자(지역별·성별·종류별 「관찰·상담·진단·처방」, 질병별 환자 수)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조사(보고)체계 : 원격의료기관 → 시·군·구 → 보건복지부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2014년) 의료법 개정안 추진
 - (2015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공포 후 1년 후)
 - (동 제도 시행 이후) 통계작성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 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 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8 절

환경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민경제발전, 공공복리증진 기여
정 책 (제 도) 명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 재활용 촉진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7. 09. ~ 2013. 08. 20.
소 관 기 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배수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안전성 확보
 - pH기준 설정 :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재활용가능 건설폐기물,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 개념 도입
 - ‘건설폐토석’ 중간처리 후 재활용가능한 토사를 → ‘순환토사’로 ‘건설오니’ 중간처리 후 재활용가능한 진흙 → ‘순환진흙’으로 규정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대상건설공사의 기준 및 범위 조정
 - 도로공사 기준을 길이에서 면적으로 개정하고 보수공사까지 확대함
 - (현행) 공사구간이 1km 이상인 신설공사, 확장공사
 - (개정) 공사면적이 1,000m²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보수공사
 - (추가) 농어촌도로는 공사면적이 500m²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보수공사

- 재활용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추가
 - (현행) 전년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공급실적
 - (개정)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생산과 공급실적(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 건설폐기물 발생 현장 내에서는 수집·운반증 없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참 고

주요 개정안

[법률]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재활용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2.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재활용현황 통계개발·개선하겠다는 환경부 의견에 동의
- 협의내용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재활용 현황 -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생산량 및 판매량, 용도별 사용량 등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재활용 현황

* 건설폐기물 재활용통계조사에 순환토사·진흙의 재활용현황을 추가

- 조사목적 :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생산 및 판매 현황 등을 통하여 고품질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법적근거 : 법 11조, 영안 제8조제2항
- 조사(보고)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중간처리업자
- 조사항목
 -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생산판매현황
 - 공급방법별(구입, 현장재활용)
 - 용도별(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아스팔트콘트리트용 등)
- 작성주기 : 1년
- 조사(보고)체계 :
 - 배출자 및 중간처리업자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환경부
- 추진일정(조사시기, 결과보고 등) :
 -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 별지 서식 개정 반영 : 2013년
 -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순환골재 등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중간처리업자용)” 등 서식 개정
 - (조사) '15년 상반기 → (결과보고) '15년 하반기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의 재활용현황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정 책 (제 도) 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생활주변 대기오염원(주유소 등) 관리 강화
입 법 예 고 기 간	-
소 관 기 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정의 신설
 - 온실가스 배출량 :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km)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
-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화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결과 보고
 -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사항 규정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 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함
-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
 -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예보제 법적근거 마련
 -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대기오염 예보제 실시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행령에서 통계지표 제시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위임 규정
 -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센터를 지정·위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의무화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명문화 하며,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관리 실적 통계개발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관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제원, 판매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효율 등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관리 실적

- **조사목적** :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 여부 확인 및 이월·상환·거래 등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동법 개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
- **조사대상** : 자동차제작자
 - 3.5톤 미만 10인 이하 승용·승합차

- 조사(보고)사항
 - 자동차의 제원, 판매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효율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조사(보고)체계 : 자동차제조사 → 환경부장관
- 추진일정 : '14년도 실적부터 조사
 - 조사('15년 상반기) → 내부결과보고('15년 말)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관리 실적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
정책(제도)명	완충저류시설 전국 수계 확대, 조류피해예방 범위 확대
입법예고기간	2013. 06. 28. ~ 2013. 08. 06.
소관기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전국 수계로 확대
 -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빗물, 오수, 폐수, 소화수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하여야 함(단,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제외)
 -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업단지에 준공인가 불가 등
- 조류피해예방 범위확대
 - 호소에 국한된 조류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여 취·정수장 피해를 예방
- 상수원호소의 지정 및 관리
 - 일반수도사업 인가자는 먹는물 공급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한 경우 또는

상수원호소에서 수도사업의 인가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상수원호소 지정 및 해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규정 등 측정기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등록 규정을 마련
 - 기기조작, 고장기기 방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익금의 10배이상 30배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 근거 마련 등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실시계획 승인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정하고 운영·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및 평가결과 우수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 등 지원 가능한 근거를 신설
-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5년) 수립
 - 각종 개발·산업·농업 등에 기인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행사항 추진실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 종합대책에 포함될 사항
 -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 그 밖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
 - 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정기적 수질 검사 및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법인) 설립 근거 마련
 - 측정기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 설립 가능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실적평가 및 공시 근거 마련
 - 관리대행실적,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 등에 따른 행정처분현황,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유지관리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참 고

주요 개정안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업지역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2. 산업단지 : 개발사업시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빗물·오수·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2. 폐수배출시설 중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①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및 공공수역을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수면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의2(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완충저류시설 전국 수계 현황 작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실시 등 통계개발·개선하겠다는 환경부 의견에 동의
- 협의내용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저류시설 전국 수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수계별 시설현황 - 유해물질 차집 및 처리현황 등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유형별, 시도별) -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초과시설) - 관리실태 점검결과(위반내역, 과태료 처분 등)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완충저류시설 전국 수계 현황

- **조사목적** : 완충저류시설 전국확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현황을 조사·평가하기 위함
- **법적근거** : 법안 제21조의4
- **조사대상** : 전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
- **조사항목**
 - 수계별 시설현황
 - 유해물질 차집 및 처리현황 등
- **작성주기** : 년 1회
- **조사체계** : 지자체 → 환경부장관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 계획수립('15) → 조사시기('15.12) → 결과보고('16.2)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현황 및 수질관리 현황 파악, 관리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법적근거** : 법안 제61조의2
- **조사대상**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또는 관리자
- **조사항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유형별, 시도별 현황)
 - 수질검사결과(항목별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초과시설)
 - 관리실태 점검결과(위반내역, 과태료 처분 등)
- **작성주기** : 매년
- **조사체계** : 수경시설 설치·관리자 →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 조사계획('14.4월) → 조사실시('14.5월) → 결과보고('14.6월)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완충저류시설 전국 수계 현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4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등의 사용촉진,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 및 지원
입법 예고 기간	-
소관기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폐기물 제외 기준 및 순환이용에 따른 폐기물의 종료의 인정기준, 인정방법, 인정취소 등
 -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순환자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설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등
 -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영리단체 등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 기본계획(10년)의 수립·시행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순환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국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확보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투자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환경부장관 승인 → 시행하여야 함
- 자원순환 통계조사 등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6조에 따른 목표설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통계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통계조사의 대상, 조사 시기 및 방법과 통계의 작성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
 - 환경부장관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관계 자료의 확인이나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
- 국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
 - 국가의 중장기 및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에 맞추어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 ① 중장기 및 단계별 자원순환목표 설정 사항
1. 자원과 순환자원의 투입에 대한 자원순환률
 2. 에너지투입량 대비 순환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순환율
 3. 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량에 대한 최종처분율
 4. 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에 대한 순환이용률
 5.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회수율
 6. 자원 및 에너지 투입량 대비 매출액에 대한 자원생산성

- 자치단체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지역별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역별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리대상자별로 제16조제1항 제1호~제4호까지의 목표를 설정·관리함
 - 관리대상자는 매년 이행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행계획을 검토 후 그 적합여부 알려야 함
 -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상자가 목표를 달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는 자금지원, 실태조사, 기술진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제품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 사업자는 제품등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함에 있어 당해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적절한 순환이용 및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 가능성, 중량과 체적(재질과 성분 포함),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내구성
 -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등에 대하여 자원순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순환자원 또는 순환제품의 품질표지 인증제도
 - 품질 인증을 실시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순환제품 품질표지 등을 표시
 - (현행) 고탄연료제품 등에 일부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
 - (변경) 사업자가 원할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품질인증
 - 인증 받은 순환자원 또는 순환제품을 우선 구매 요청 및 권유로 수요 촉진
- 자원순환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자원순환촉진기금을 설치
 - 기금은 자원순환·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폐기물부담금·가산금, 재활용부과금·가산금,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함
 -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함

- 자원순환 정보체계 구축 등
 -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관련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자원순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음
-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참 고

주요 제정안

제12조(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과 처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순환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국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확보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자원순환 통계조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6조에 따른 목표설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통계 등 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자원순환산업 현황 통계개발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업종별 자원순환율, 에너지순환율, 자원생산성 - 천연자원투입량, 에너지투입량, 순환자원 투입량, 에너지회수량, 매출액 등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자원순환산업 현황

- 조사목적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목표 관리
- 법적근거 : 법안 제14조 및 제15조
- 조사대상 : 폐기물 배출 기업(시행규칙에서 업종 지정)
- 조사(보고)사항
 - 천연자원투입량, 에너지투입량, 순환자원투입량, 에너지회수량, 매출액 등
 - * 조사사항을 활용하여 업종별 자원순환율, 에너지순환율, 자원생산성 등 작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조사(보고)체계 : 기업 → 환경부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 계획수립('16년 하반기) → 조사시기('17년 상반기) → 공표('17년 하반기)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자원순환산업 현황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입법예고기간	2013. 07. 26. ~ 2013. 09. 04.
소관기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재활용의무생산자 폐자원 회수 의무화
 - (현행) 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활용실적,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 등 규정
 - (개정) 생산자의 폐자원 재활용의무에서 회수·재활용의무로 변경
 - 재활용실적 → 회수·재활용실적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재활용단위비용 → 회수·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
 - 재활용 실적 조사 등 → 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개선
 - (현행)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포장재는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임

- (개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자로 전환
플라스틱 포장재는 EPR 대상 포장재와 같은 경로로 회수되어 재활용되고 있는데,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어 개선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가 생산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임



참 고

주요 개정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 2의2.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포장재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각 목의 제품외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 등이 제1항에 따라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제품·포장재별 표준 회수·재활용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29조(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자원 재활용실적조사를 폐자원 회수·재활용 실적조사로 변경 실시하겠다는 환경부 의견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자원 회수·재활용실적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실적 (현행) 재활용실적 → (변경) 회수·재활용실적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자원 회수·재활용 실적조사

- 조사목적 : 재활용의무량 중 회수·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하여 회수·재활용한 경우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 근거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법 제16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조사대상**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 **조사항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실적
- **작성주기** : 매년
- **조사체계**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 EPR시스템 (www.iepr.or.kr)에 입력·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한국환경공단 : 현장조사 및 실적 작성 → 환경부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관련 서식 개정에 반영(회수 관련 추가) : 2013년
 - (계획수립) '14년초 → (조사) '14년 연중 → (결과보고) '14년말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자원 회수·재활용 실적조사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9 절

여성가족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입법예고기간	2013. 10. 16. ~ 2013. 11. 25.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국제결혼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국제결혼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 국제결혼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생활 현황에 관한 사항
3.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결혼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단체에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행정기관 또는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국제결혼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법률]

-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국제결혼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생활 현황에 관한 사항
 3.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결혼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단체에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행정기관 또는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체 현황, 이용자 및 상대방 현황, 이용자 및 상대방 피해 현황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업체수, 종사자수, 국제결혼 중개건수, 매출액, 자본금 등)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및 상대방 현황(연령별·학력별·직업별·소득별 이용자수 및 출신국별·연령별·학력별 상대방수 등) - 국제결혼 피해현황(중개업체 또는 상대방으로 받은 유형별 피해자수 및 피해금액) 	통계개발개선 계획 (여성가족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국제결혼 실태조사

- 조사(보고)목적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절차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법 제2조의2
- 조사(보고)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 조사(보고)사항
 -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중개업체수, 종사자수, 국제결혼 중개건수, 매출액, 자본금 등)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및 상대방 현황(연령별·학력별·직업별·소득별 이용자수 및 출신국별·연령별·학력별 상대방수 등)

- 국제결혼 피해현황(중개업체 또는 상대방으로 받은 유형별 피해자수 및 피해 금액)

○ 작성(보고)주기 : 매 3년

○ 조사(보고)체계 : 조사원 → 연구용역기관 → 여성가족부

○ 추진일정

- 국제결혼 실태조사 연구용역기관 선정 : 2014. 1~3월

- 조사항목개발 및 조사, 결과심층 분석 : 2014. 4~12월 중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2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정책(제도)명	여성인재 관리 및 사회참여 확대
입법예고기간	2013.10.10. ~ 2013.11.19.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공직적합성 및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로 한정함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본인이 서면 작성 제출,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입력
 - 인사상의 목적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림

- 공무원 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여성인재(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자료 및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국가기관 등이 인사상의 목적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열람하도록 함

▷ 여성인재 정보 제공 범위 및 정보 제공 절차

- 정무직(선거직을 제외), 개방형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선 시,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 위원 위촉 시 등의 경우 국가기관 등에 여성인재 정보 제공
- 정보 제공 요청시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 및 활용결과 통보서 등 제출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폐기
 -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보의 열람·정정·폐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조치의 강구
 - 여성가족부장관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 고

주요 제정안

제2조(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범위)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여성인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공직 적합성 및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로 한정한다.

제4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여성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80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실질평가 대상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인재 현황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재 현황 - 연도별·분야별·직종별 등 - 연도별 제공건수, 열람건수 	통계개발개선 계획 (여성가족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여성인재 현황

- 조사(보고)목적 :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
- 법적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3

- **조사(보고)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전문직 여성종사자
 - 5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 및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상장법인 및 유망 중소기업의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 및 사무총장급에 해당하는 자, 기타 문화예술인, 실무형 창의인재 등
- **조사(보고)사항**
 - 인적사항, 전문분야,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저서, 논문, 업무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 감사결과, 각종 평가자료 등
- **작성(보고)주기** : 2014년부터 매년
- **조사(보고)체계**
 -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 국가인재 DB자료 활용
 - 전문직종사자(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 본인이 서면작성 제출 또는 여성가족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 입력
- **추진일정**
 - 조사시기 : 2014년부터 매년 12.31일 기준으로 조사
 - 공표시기 : 내부 자료로 활용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18대 국정과제(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등 여성인재 관리 및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0 절

국 토 교 통 부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정책(제도)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입법 예고 기간	2013. 12. 6. ~ 2014. 1. 15.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 의뢰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을 포함
 - *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함
- 정비기본계획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성과 및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계획 수립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 위탁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고, 필요시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철거명령 및 이행
 -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사유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철거이행 후 건축주가 15일 이내 이행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공사비용의 보조나 용자
 - 시도지사가 사업내용 및 보조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후 공사재개 비용 보조나 용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추후 건축주가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를 의무화함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을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취득할 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액 등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급 또는 공탁하되, 소유주가 공탁 등에 불복할 시에는 재결신청 등을 하도록 정함
- 정비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
 - 시도지사는 정비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정비기금 재원으로 채권발행, 타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추가하고 방치건축물 환경정비 등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위임 및 위탁
 - 시도지사 업무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방치건축물의 취득, 취득 후 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정하고,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업무 위탁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을 정함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 및 인공구조물·시설 등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전국 또는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 이의제기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현황,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직·간접적 원인 등	통계개발계획 (국토교통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조사목적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법적근거

- 법 제4조, 령 제2조~3조

○ 조사대상

- 착공신고 후 건축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 조사(보고)사항 :

-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현황,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직·간접적 원인, 권리관계 현황 등

○ 작성(보고)주기 : 격년 또는 필요시

○ 조사(보고)체계

- 국토교통부 조사의뢰 → 한국감정원 등에서 조사(안 제3조제3항) → 국토교통부로 조사 결과 제출

○ 추진일정

- 계획수립('14년), 조사시기('14년 또는 '15년), 결과보고('14년 또는 '15년)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정 책 (제 도) 명	서민의 주거안정 및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신규임대주택 제도 도입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8. 6. ~ 2013. 9. 16.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규정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요건(2013년 4월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을 정하고,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
 -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실제 공급가격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

-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 중인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방법
 -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참 고

주요 개정안

제8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13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공기업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말한다)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

평가한 금액에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가. 해당 택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이하 이 조에서 “지가변동률”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률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借賃)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준공공임대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는 기존 임대주택통계(승인 11636)의 조사항목 개선을 통해 '14년기준 통계조사(조사시기 : 2015년)부터 반영할 계획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임대주택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건설실적, 재고현황 등	통계 개발·개선계획 (11656, 임대주택통계개선) (국토교통부)

〈통계개발·개선 세부계획서〉

□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임대주택 현황

○ 조사목적

- 신규로 도입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임대주택정책 추진현황 파악 및 향후 임대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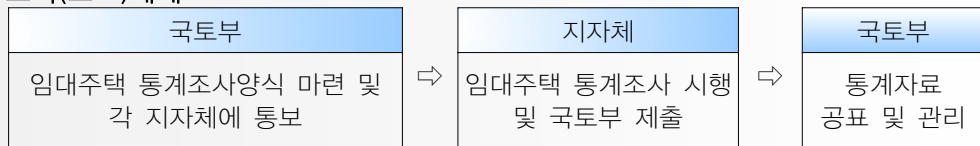
○ 법적근거 : 영안 제8조의2·3, 제13조의2·3

○ 조사대상 :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임대주택

○ 조사(보고)사항 : 연도별, 지역별 건설실적, 재고현황 등

○ 작성(보고)주기 : 1년

○ 조사(보고)체계



○ 추진일정

- 기존통계 변경안 마련('14.3.) → 변경승인 신청('14.6.) → 통계조사('15~) → 공표('15~)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 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입법예고기간	2013. 7. 5. ~ 2013. 8. 16.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현지조사 또는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
-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 명확화
· 도시재생 연구, 조사, 지자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구체화
· 법에서 위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인구, 산업, 주거 등 3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을 구체화
·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규정하여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기존 시가지 위주로 명확화

* (인구) ① 최근 30년간 최대치 대비 20% 감소 또는 ②최근 5년간 3년연속 감소
 (사업체수) ① 최근 10년간 최대치 대비 5% 감소 또는 ②최근 5년간 3년연속 감소
 (주거)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 50% 이상

○ 보조·용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 법에서 위임한 도시재생사업에 보조·용자할 수 있는 항목 중 국가 지원항목과 항목별 지원비율의 상한선 규정

○ 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른 지원 차등화 규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총 사업비 중 국비 보조비율 상한선을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매년 지자체별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자주도 : 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의 척도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 × 100



참 고

주요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 및 가구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세수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6. 그 밖에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기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평가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현황 -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 지자체 재정여건 현황 -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등 	통계개발개선 계획 (국토교통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조사목적
 - 도시쇠퇴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한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및 도시재생정책의 종합적 계획적·효율적 추진
- 법적근거 : 특별법 제4조 제5항, 영안 제4조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쳐, 사업체,

시도 및 시군구 등

○ 조사(보고)사항

- 인구 및 가구구성 현황,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현황,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지자체 재정여건 현황,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조사(보고)체계

- 국토부 직접조사 또는
- 광역자치단체로 조사계획 통보→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자료 제출 요청→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국토부로 제출

○ 추진일정

- 계획수립(2014년)→ 조사(2015년)→결과보고(2015년)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정책 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정책(제도)명	특수주거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입법예고기간	2013. 4. 9. ~ 2013. 5. 19.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특수주거계층 주거실태조사 도입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 특수주거계층에 대해서 정기적인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를 마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연구용역('13년 상반기) 종료 후 세부계획 수립 및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 실시('13년 하반기)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주거계층(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주거실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가구특성 -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만족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등 	통계 개발·개선 계획 (국토교통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특수주거계층 주거실태조사

- 조사목적 : 특수주거계층의 주거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국민주거복지 정책 지원

- 법적근거 : 주택법 제5조 제3항
- 조사대상 : 특수주거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
- 조사(보고)사항 : 주거환경, 가구의 특성,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등
- 작성(보고)주기 : 격년
- 조사(보고)체계
국토교통부장관(조사 위탁) → 조사전문기관(조사) → 국토교통부장관(공표)
- 추진일정
 - (연구용역 의뢰) '13년 상반기
 -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실시) '13년 하반기
→ (결과 공표) '14년
 - (특수주거계층 주거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실시) '14년 또는 '15년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특수주거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1 절

해양수산부

1.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정 책 (제 도) 명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8. 22. ~ 2013. 10. 01.
소 관 기 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 범위 규정
 -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과 작업특성 등을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업환경 개선장비 및 안전보건기술 개발·보급하고,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 가능
-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를 위한 세부내용 규정
 -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 농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어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 어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참 고

주요 개정안

제9조의2(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및 개선 지원 등) ① 법제14조제2 항에 따른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음, 진동, 온열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 개선장비 개발 및 보급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 개발 및 보급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 등

제9조의3(농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기타 어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질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의 질환 발생 및 예방에 관한사항 - 어작업 환경 및 작업특성 등 ○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개선 및 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시설 작업환경에 대한 건강위해요소 측정개선 및 지원현황 등 	통계개발계획 (해양수산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어업인 질환현황

- 조사(보고)목적 : 어업인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도모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사대상 : 어업인
- 조사(보고)사항
 - 어업인의 질환발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어작업 환경 및 작업특성에 관한 사항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14년 5월 계획수립, 5월~11월 조사실시, 12월 공표예정

□ 작업자 건강위해요소 개선 및 지원현황(어업부문)

- 조사(보고)목적 : 어업인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도모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사대상 : 어업 시설에 대한 작업환경
- 조사(보고)사항 : 건강위해요소 측정·개선 및 지원현황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14년 5월 계획수립, 5월~11월 조사실시, 12월 공표예정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정책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 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 도모
정책(제도)명	연근해어업 혼획제도 도입
입법예고기간	2013. 09. 17. ~ 2013. 10. 28.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연근해어업 혼획제도 도입
 - 어구·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의 혼획어종 및 혼획비율을 정함
 - 혼획의 범위를 적용받은 어업인 혼획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혼획어업 판매장소 지정
 - 어획물 혼획한도 확인 등
- 자율관리공동체 및 어업자 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에 대하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기준의 범위를 정함
- 「수산자원관리법」의 어선 및 어구 규정이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법령체계(별표 등) 정비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불법조업어선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참 고

주요 개정안

제27조의2(혼획의 관리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혼획 어종 및 혼획의 범위는 별표 2-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혼획의 범위를 적용받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은 혼획이 저감되는 장치(이하 “혼획저감장치라”한다)를 어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끝자루 그물의 막매듭 망지부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된 어획물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에 따른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제1항 별표2-1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별 혼획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산동물이 포획되고 있거나 확인된 경우 조업중단 및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어업인은 어업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어획물의 혼획의 범위 확인은 전량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어획량 등을 고려하여 표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100kg으로 하고, 그 밖의 혼획의 범위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혼획어업 어획량을 파악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유지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획어업 어획량 현황 통계가 필요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파악	○ 혼획어업 어획량 현황 - 어업종류별 목표어종 및 혼획어종	통계개발계획 (해양수산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혼획어업 어획량 현황**

○ **조사(보고)목적**

- 혼획어업 어획량을 파악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유지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수산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의2(혼획의 관리 등)
- 조사대상 : 혼획대상어업
- 조사방법 : 행정보고

○ **조사(보고)사항** : 목표어종 및 혼획어종별 위판실적

○ **작성(보고)주기** : 월별

○ **추진일정**

- '14년 1/4분기 계획수립 및 조사실시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연근해어업 혼획제도 도입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 개발·개선 계획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정 책 (제 도) 명	해외수역에서의 불법어업 근절
입 법 예 고 기 간	-
소 관 기 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양어업을 원칙적으로 허가
-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 검색

-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실태조사의 방법·시기·공표방법은 부령으로 정함
- 국제수산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추가
-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 등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참 고

주요 개정안

-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해외수역에서의 불법어업 근절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관리 할 계획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사례 -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현황 - 원양수산물생산 현황 - 관련 종사자 현황 등 	통계개발계획 (해양수산부)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원양산업실태조사

○ 조사(보고)목적

- 해외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실태 파악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
- 조사대상 : 원양업체

○ 조사(보고)사항

-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종사자 현황 등 원양 산업 관련 통계

○ 작성(보고)주기 : 5년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15년 09월, 조사실시 : '15년 10월 공표시기 : '16년 01월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해외 수역에서의 불법어업 근절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14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1차 점검 및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2 절

식품의약품안전처

1. 약사법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약사법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정 책 (제 도) 명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 평가 체계 강화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8. 27. ~ 2013. 10. 28.
소 관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의약품등 수입자 관리제도 개선
 -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자 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수입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 평가 체계 강화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관련 기관 등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약품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소속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약물역학조사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약국, 의료기관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
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 ③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68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약물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조사관(이하 “약물역학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약물역학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약물역학조사관으로 하여금 약국, 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약물역학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통계청의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의견을 반영하여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조사를 위한 약물역학조사에 대한 통계 개발개선이 필요

○ 협의내용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약물역학조사 현황 - 연도별·전문분야별 약물역학조사관 수, 약물역학 조사결과 등	통계개발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약물역학조사 현황

- 조사목적 :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규명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 법적근거 : 약사법 제68조의12
- 조사(보고)대상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조사(보고)사항
- 연도별·전문분야별 약물역학조사관 수, 약물역학조사 결과 등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조사(보고)체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약사법 개정 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범위 등이 규정된 이후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 평가 체계 강화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3 절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정책(제도)명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입법예고기간	2013. 10. 10. ~ 2013. 11. 20.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 등록 취소된 사업자 명단 공개 등
 -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등의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등의 금지
 -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 시 소요 비용의 100분의 40이내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함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단축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및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영업포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함
- 서면실태조사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고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현황 - 조사대상 업종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수 - 가맹점사업자 주요 애로사항 및 지적사항 	통계개발계획 (공정거래위원회)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현황

- 조사(보고)목적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현황 및 주요 유형별 법위반행위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하여 현장조사 및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 조사(보고)대상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전체 약 17만개 가맹점사업자 중 매년 업종별로 표본조사)

- 조사(보고)사항
 - 가맹본부 : 거래중인 가맹점사업자 및 거래 종료된 가맹점사업자 현황 등 주요 거래현황
 - 가맹점사업자 : 거래기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여부(정보공개서 제공여부, 영업지역침해·매장환경개선 강요·구속조건부거래·구입강제 등),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제도에 관한 인지도 등
- 작성(보고)주기 : 2014년부터 매년 1회
- 조사(보고)체계 : 방문조사(서면) 또는 전화조사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계획수립 : 2014년부터 매년 4~6월
 - 조사시기 : 2014년부터 매년 6~10월
 - 공표시기 : 2014년부터 필요시 매년 말 결과공표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개발·개선
 -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4 절

금융위원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정 책 (제 도) 명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및 코넥스 도입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3. 26. ~ 2013. 04. 25.
소 관 기 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영안 제14조의2)
 - 청산대상업자에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은,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
- 코넥스 도입(영안 제11조제4항)
 -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발행공시 의무 완화
 - 코넥스 시장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의 모집·매출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참 고

주요 개정안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호의 주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를 위한 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발행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에서 제외한다.

1. 전문투자자
2.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자
3.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라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 각 호(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라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
6.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2.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가. 환매조건부매매
 - 나. 증권의 대차거래
 - 다. 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를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와 그의 고객(금융투자업자 및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간의 상장증권(채무증권을 제외한다)의 위탁매매거래(이하 “주식기관결제거래”라 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동 법령의 개정시 도입되는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청산거래건수, 계약금액, 미결제잔액 등) 및 코넥스 시장 현황(코넥스 상장기업 수, 거래량, 거래금액 등)을 국가승인통계인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에 추가하여 작성·관리할 계획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청산소 인가기관 수 - 청산 거래건수(량)·계약금액, 미결제잔액 등 	통계개발·개선계획 (금융위원회, 중앙청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넥스 시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넥스 상장 기업 수 - 거래량 및 거래금액 등 	통계개발·개선계획 (한국거래소)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

- 조사목적 : 청산의무거래·자율청산대상 거래정보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보관·관리를 통한 장외거래의 노출위험 파악 및 적시적인 시장관리 강화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조사대상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보고체계 : ① 중앙청산소 인가 수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② 청산 거래정보 : 중앙청산소 ⇒ 금융위원회
- 조사(보고)사항
 - ①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인가기관 수
 - ② 청산대상거래별 청산 계약건수(량)·계약금액, 미결제잔액 등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및 코넥스 도입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 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정 책 (제 도) 명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6. 14. ~ 2013. 07. 24.
소 관 기 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위험관리·내부통제기준 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가요건을 설정하고, 매매가격결정방법 및 매매체결 대상상품, 거래소 전환기준 등 세부적인 업무기준을 마련함
 - 거래소의 시장개설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정하고, 거래소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등을 구체화 함
- 자산운용산업의 규제 체계를 정비
 -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문 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예외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위임요건을 마련함

- 인수·공시·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정비
 -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기준을 해외사례 및 개별 보수공개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억원으로 설정함
 -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② 법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9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 제6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자재산(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전환의 조건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지표·단위·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발행인, 그 발행인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2. 사유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공표될 수 있을 것
-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사유 및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⑦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 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거래현황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
- 협의내용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ATS 수 및 재무제표 - 회사별 상장종목 및 거래실적 등 	통계개발개선 계획 (금융감독원)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현황

- 조사(보고)목적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거래량 및 거래금액 등을 파악
- 법적근거 : 법률 제8조의2 및 제78조
- 조사(보고)대상 : 상장공시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등
- 조사(보고)사항 : 연도별 ATS 수, 회사별 상장종목 및 거래실적 등
- 작성(보고)주기 : 매일 작성하되, 금감원에 월 단위로 보고
- 조사(보고)체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금융감독원
- 추진일정 : 조사시기 → 매일집계(시스템), 공표시기 → 매일공표(시스템)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다자간매매채결회사 현황 등 정책의 현황·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 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 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 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5 절

소방방재청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 적	소방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정 책 (제 도) 명	소방산업 육성 및 지원
입 법 예 고 기 간	2013. 07. 02. ~ 2013. 08. 10.
소 관 기 관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소방산업 범위의 재정립
 -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 범위에 포함하고자 법률적 근거 마련
- 소방산업진흥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재성 있는 업무수행의 근거 마련
-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개선
 - 시행계획의 수립기한 명확화
- 소방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사업화 지원
 - 소방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신제품 및 신기술 발굴 정책의 추진근거 및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
-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 소방신기술 관련 소방산업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위한 근거 마련
- 소방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 소방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소방산업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협조 근거를 마련
- 소방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 소방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
- 소방산업 공제조합의 업무범위 재정립
 - 현재 공제조합이 수행중인 업무 중 법률에 근거가 미비한 사항 보완 및 보증기관으로서 보증현장 조사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 고

주요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항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④ 그 밖에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신제품 및 신기술의 발굴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개발된 소방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촉진, 창업자 성장·발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소방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체계적인 소방산업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소방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 소방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을 도입함에 있어 통계와 정책과의 연계 강화, 정책(제도)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 관리 실질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소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산업통계 실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산업 사업실적 현황(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 소방산업 시설투자 현황(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설비, 기계장치·토지·건물취득, 자원 조달 현황 - 소방산업 연구개발 현황(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 위탁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등 	소방산업통계 실태조사 통계개선 계획 (소방방재청)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소방산업통계 실태조사

- 조사(보고)목적 : 소방산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대상(법적근거, 보고체계)
 - 법적근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조사대상 : 국내 소방산업체
 - 조사방법 : 위탁조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방재청
- 조사(보고)사항
 -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일반현황(업종별 현황, 전업 및 겸업현황, 조직 형태별 업종 분포, 상장 여부, 기업인증 여부 등 세분화)
 - 인력현황(종사자 일반현황 직무유형 현황, 연간급여액, 근속년수별, 종사자 최종 학력별 등 세분화)
 - 경영현황(매출액, 영업비용, 수익률 현황 등 세분화)
 - 연구개발 현황(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현황, 연구개발 비용 등 세분화)
- 작성(보고)주기 : 1년
- 추진일정
 - 통계조사 계획 수립('13년 8월)
 - 통계조사 실시('13년 10월~12월)
 - 조사결과 발표('14년 1월)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개발·개선
 - 소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건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6 절

특허청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상법령

목적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정책(제도)명	지식재산산업 육성
입법예고기간	2013. 10. 11. ~ 2014. 12. 20.
소관기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나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관련 사항 신설 및 명칭 변경 (발명교실→발명교육센터) 등 반영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및 승인 등
 - 지도교사 배치 및 임용 기준, 보조교사 임용 근거, 연구비지원, 인사상 우대 근거 등 마련
- 연구노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 작성한 연구노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마련
-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규정 협의 절차,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신설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요건 완화 및 평가절차 기준 신설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이 용이하도록 특허기술정보센터 등록 시 장비 확보 기준 완화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의 세분기준을 규정
- 산업재산권서비스업과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등 신설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항목 등을 규정
- 기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구체화
 - 법규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1에 구체화



참 고

주요 개정안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의5(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6(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7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조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허청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 ②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7(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6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다 평가요청 및 협의

- 평가유형 : 예비평가(), 실질평가(○)
- 요청의견 : 산업재산권서비스업실태조사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하다는 특허청의 의견에 동의
- 협의내용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서비스업 실태조사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 수입 및 수출, 인력 등 	통계개발계획 (특허청)

특허청

〈통계개발 세부계획서〉

□ 산업재산권서비스업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을 수립·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산업 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 수집 필요
-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 제40조의5, 시행령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
- 조사대상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분야 민간기업 및 단체
- 조사항목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 수입 및 수출, 인력 및 수요·공급의 실태, 국제 동향 등 필요한 사항
- 작성주기 : 3년 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
- 조사체계
 - 국민, 국내기업 및 단체 → 산업재산권서비스업 전문기관 → 특허청
- 추진일정 : 미정
 - 기본계획 수립·시행 후 '14년 하반기에 조사 실시

라 평가결과

- 평가의견 : 통계 개발·개선
 - 지식재산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기까지 매년 1/4분기 중에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제 2 편

통계지표 활용실태 및 주요 정책활용 사례집

제1장 개요, 평가현황 및 점검결과

제1절 개요

1. 통계지표 활용실태
2. 통계정책 주요활용실태

제2절 평가현황 및 점검결과

제1장은 2013년에 통계청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통계지표 활용권고 한 통계를 정책에 활용하였는지 점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1장 개요, 평가현황 및 점검결과

제1절 개요

1 통계지표 활용실태

1. 추진 배경

- 2013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결과 「통계지표 활용권고」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
 - 실질평가 결과 중 「통계지표 활용권고」가 85.5%를 차지하여 부처의 사용실태(피드백) 파악이 필요
- 통계청이 활용 권고한 통계지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파악한 실태를 반영하여 통계기반 정책평가 지표 발굴에 대한 관리강화

2. 점검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2013년 「통계지표 활용권고」 된 27개 기관, 177개 법령, 766개 지표
- 추진기간 : 2014.3.17.~ 4.12.

3. 점검결과

□ 입법현황

- (법령) 점검대상 법령 177개 중 138개(78.0%)가 입법 완료, 39개(22.0%)가 입법진행
- (지표) 입법이 완료된 138개 법령의 572개(74.7%)가 점검 지표

□ 통계지표 활용실태

- 572개 지표에 대한 활용실태는 활용이 453건(79.2%), 활용예정 88건(15.4%), 미활용 31건(5.4%)
 - 활용 중에서는 현황파악 199건(34.8%) 정책집행 185건(32.3%), 성과지표 65건(11.4%) 순

※ 성과지표 : 지표를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정책집행 : 정책의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에 활용한 경우
현황파악 : 정책의 기초자료 또는 실태파악 등에 활용한 경우

- 미활용 실태는 31건(5.4%)으로 그 사유는 정책과 상관없는 통계지표가 15건, 통계지표 발생건수가 적어 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9건임
 - 기타 사유는 관련 조문 삭제 5건, 통계개설 실적 없음이 2건임

□ 부처별 활용실태

- 활용 건수는 국토교통부 81건(14.2%), 농림축산식품부 65건(11.4%), 환경부 60건(10.5%), 보건복지부 56건(9.8%) 등
 - 활용권고 통계지표 대비 활용도가 높은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53건(94.6%), 기획재정부 18건(90.0%), 여성가족부 26건(89.7%), 금융위원회 16건(88.9%) 순
- 미활용은 국토교통부 8건(9.9%), 중소기업청 5건(12.8%), 식품의약품안전처 3건(30.0%) 등

2 통계정책 활용사례

통계청은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에 최초로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2013년까지 총 5,052개의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통계개발·개선」에 대하여는 제도시행(2008년) 이듬해인 2009년부터 매년 3월에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다.

통계정책 활용 사례에 대한 점검은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2013년에 통계 개발개선이 완료된 42개 통계 중 30개의 주요 정책 활용사례를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주요 정책 활용사례〉

소관부처	개발·개선통계	활 용 사 례(예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실태조사	협동조합 수, 조합원 수, 자산 등을 협동조합 활성화 및 취업자 확대를 위한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에 활용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조사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지원으로 소출력 중계기 구축, 마을공시청시설, 위성수신기 보급 등 디지털 수신환경 조사 분석을 통해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정책에 활용
교육부	학교진로교육 실태 조사	학교진학상담교사 배치, 진학상담 전담부서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에 활용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유치원취학 수요조사 결과 유치원 수, 유치원 원아 수, 유치원 교원 수 등을 반영하여 유아수용 계획 수립 지침 마련
	수석교사 운영실태	시도교육청별 수석교사 임용 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석교사 선발·운영 계획을 수립

소관부처	개발·개선통계	활용 사례(예정)
안전행정부	보행자 전용길 지정 현황	경기도 양주시에 보행자 전용길 지정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예정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전국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총 19개소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2012년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수는 총 3,951개소로 연간 총 21,351천명이 이용하는 등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
	이스포츠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프로게임단, 프로게이머 종목 수, 대회 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이스포츠 기본계획에 활용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	2014.7월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품목 1,297개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농민 및 농자재업체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현황	2013.3.12일 기준 전국의 수의사 면허소지자는 총 16,301명 중 면허 신고자는 11,481명(사망자 등 제외)이며, 취업분야별 현황을 파악하여 대규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 동원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관련 통계 조사	뿌리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통계조사 결과를 뿌리산업 인력수급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
보건복지부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조성 현황	2013.12월 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오송, 대구 경북)내 입주기관은 28개, 단지조성면적은 총 2,161천㎡이며, 사업비, 지원금 등 첨단의료복합 단지 조성현황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2013.3월 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수는 총 19,994개소이며, 전국 편의점(총 24,521개)의 81.3%가 상비의약품 판매점으로 등록하였음. 또한 상비의약품 판매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어플서비스, 도서·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1,907개)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는 등 서비스 정책에 활용

소관부처	개발·개선통계	활 용 사 례(예정)
	의료분쟁조정·중재 현황	2012.4.~2012.12월말까지 의료사고 조정 및 중재 건수는 총 503건, 신청금액은 217억원으로 의료 사고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자살실태조사	2012년 연간 사망자 수 중 자살이 14,160명이며, 자살방법, 자살생각 등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예정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기관 수, 이용자 수, 예산, 제공인력 등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개선에 활용
환경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주거환경 및 혈액 등에서 수은, 카드뮴 등 16종 모두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실태조사	2012년 기준 전국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총 405개이며, 면적 893km ² 로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 계획 수립에 활용
	지질공원 현황	국가지질공원 인증수는 전국 5개이며, 지질공원 해설사 수, 탐방객 수 등을 국가지질 탐방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예정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완공 2개소, 진행 11개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취업실태, 교육훈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및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2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약 57만가구 중 이혼 76.4%, 사별 18.2%이며 소득, 주거실태 등 실태조사 결과를 한부모가족 지원대책 수립에 활용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 등록 현황	2013.1.15일 제도시행 이후 2014.2월말 기준 전자 단기사채 발행 건수는 3,843건이며, 총 발행금액은 100조 6,500억원 등 단기사채발행 현황을 증권 정보포털에 공시하여 증권사 활용

소관부처	개발·개선통계	활 용 사 례(예정)
	코넥스시장 현황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 위해 코넥스 시장을 2013.7.1일 개설 이후 상장기업 수, 거래량, 거래 금액 등 코넥스시장 동향 홈페이지 개설·운영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	청산건수, 청산대금 등 거래현황을 공시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 총 14,201개 중 토석류 12,661개(89.2%), 산사태 1,540개(10.8%)로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활용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 통계	살림·습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수종별 연간 CO ₂ 흡수량 등을 활용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 예정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2014.7월 기준 산림문화자산 지정 수는 전국 8개이며, 그중 강원지역 7개(87.5%)로 산림문화자산의 보호 정책으로 활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통계조사	2012년말 기준 소방산업 매출액은 총 10조 4,624억원으로 연구비용, 기술 및 특허건수 등 소방산업통계조사 결과를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

제2절 평가현황 및 점검결과



통계기반 정책평가 현황

(단위 : 개, %)

	합계 (A)	예비평가	실질평가			
			소계 (B)	비율 (B/A)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 개발개선
계	5,052	3,072	1,980	39.2	1,730	250
2008	1,116	729	387	34.7	320	67
2009	813	400	413	50.8	369	44
2010	679	314	365	53.8	335	30
2011	937	583	354	37.8	311	43
2012	826	572	254	30.8	218	36
2013	681	474	207	30.4	177	30



통계지표 활용현황(2013년)

(단위 : 개, %)

총계	활용					활용 예정	미활용		
	계	성과 지표	정책 집행	현황 파악	기타 활용		계	부 적절	기타
572	453	65	185	199	4	88	31	24	7
(%)	(79.2)	(11.4)	(32.3)	(34.8)	(0.7)	(15.4)	(5.4)	(4.2)	(1.2)



부처별 통계지표 활용현황(2013년)

(단위 : 개, %)

구 분		활 용					활 용 예 정(%)	미 활 용		
부 처 별	총 계	계(%)	성 과 지 표	정 책 집 행	현 황 파 악	기 타 활 용		계(%)	부 적 절	기 타
계	572(100)	453(79.2)	65	185	199	4	88(15.4)	31(5.4)	24	7
국 토 교 통 부	81(14.2)	53(65.4)	8	17	28		20(24.7)	8(9.9)	8	
농림축산식품부	65(11.4)	53(81.5)	16	20	17		8(12.3)	4(6.2)		4
환 경 부	60(10.5)	53(88.3)	4	17	32		5(8.3)	2(3.3)	2	
보 건 복 지 부	56(9.8)	53(94.6)	5	23	25		3(5.4)			
중 소 기 업 청	39(6.8)	32(82.1)	10	15	7		2(5.1)	5(12.8)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36(6.3)	26(72.2)	1	18	5	2	10(27.8)			
안 전 행 정 부	33(5.8)	20(60.6)	2	5	13		9(27.3)	4(12.1)	4	
여 성 가 족 부	29(5.1)	26(89.7)	10	10	4	2	3(10.3)			
해 양 수 산 부	22(3.8)	16(72.7)	2	4	10		3(13.6)	3(13.6)		3
고 용 노 동 부	21(3.7)	14(66.7)		4	10		7(33.3)			
교 육 부	21(3.7)	14(66.7)	1	9	4		7(33.3)			
기 획 재 정 부	20(3.5)	18(90.0)		8	10		2(10.0)			
금 융 위 원 회	18(3.1)	16(88.9)		9	7		2(11.1)			
산 림 청	15(2.6)	15(100)	2	9	4					
미 래 창 조 과 학 부	14(2.4)	7(50.0)	1	2	4		7(50.0)			
특 허 청	13(2.3)	11(84.6)	1	7	3			2(15.4)	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10(1.7)	7(70.0)		5	2			3(30.0)	3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8(1.4)	8(100)			8					
국 가 보 훈 처	4(0.7)	4(100)		1	3					
기 상 청	3(0.5)	3(100)			3					
해 양 경 찰 청	3(0.5)	3(100)	1	2						
농 촌 진 흥 청	1(0.2)	1(100)	1							



통계 개발개선 점검결과

(단위 : 개, %)

연도	법령 수	관 련 지표수	완료건수								정상 진행	
			소계	완료율	1년차 (2009)	2년차 (2010)	3년차 (2011)	4년차 (2012)	5년차 (2013)	6년차 (2014)		비율
계	235	314	229	72.9	7	26	77	40	37	42	85	27.1
2008	60	84	80	95.2	7	18	42	3	7	3	4	1.3
2009	39	65	54	83.1	-	8	23	15	4	4	11	3.5
2010	30	45	42	93.3	-	-	12	15	9	6	3	1.0
2011	40	45	33	73.3	-	-	-	7	14	12	12	3.8
2012	36	40	17	42.5	-	-	-	-	3	14	23	7.3
2013	30	35	3	8.6	-	-	-	-	-	3	32	10.2

* 주 :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시 관련 법령내용의 삭제·폐지 등으로 당초 개발개선 계획의 집계와 다를 수 있음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2장 부처별 통계정책 활용사례

- ☑ 제1절 기획재정부
- ☑ 제2절 미래창조과학부
- ☑ 제3절 교육부
- ☑ 제4절 안전행정부
- ☑ 제5절 문화체육관광부
- ☑ 제6절 농림축산식품부
- ☑ 제7절 산업통상자원부
- ☑ 제8절 보건복지부
- ☑ 제 9 절 환경부
- ☑ 제10절 여성가족부
- ☑ 제11절 금융위원회
- ☑ 제12절 산림청
- ☑ 제13절 소방방재청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 절

기획재정부

1. 협동조합실태조사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협동조합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일자리 창출 등 협동조합 활성화 및 육성·지원 위한 협동조합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조사사항 : 협동조합의 수, 조합원 수, 고용현황, 재무상황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6.11.(관련문서 통계심사과-1915)
- 작성주기 : 2년(2012년 3년마다 실태조사 → 2014년 2년으로 변경)
-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13.06.1.~9.30.) 및 완료('13.11.15.)
- 관련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시행령 제24164호, 2012.11.12. 제정, 2012.12.1. 시행, 기획재정부)
- 특이사항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합 집계로 별도 분리할 수 없음
 - 2012.12월부터 협동조합 신청인가 '14.5월말기준 4,823개(월평균 268개)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수, 조합원 수 등 - 자본금, 매출액, 잉여금 등 	통계개발계획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수, 조합원 수 - 자본금, 매출액, 잉여금 등 - 소액대출 등 및 상호부조 사업 현황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협동조합 수

- 신생설립이 730개(97.7%)로 대부분이며, 타 법인에서 전환은 17개(2.3%)
- '13.7월 조사시점 당시 영업을 시작한 곳이 406개(54.4%)이며, 조합원을 주고객(35%)으로 한 공동판매(51.4%)가 주된 수익창출방식으로 조사

□ 협동조합원 수

- 협동조합 당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이고 1,100명이 넘는 협동조합(7개) 제외 시 평균 조합원 수는 30.6명으로 조사
- 협동조합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114만원~177만원 수준

□ 협동조합 고용현황

- 직원을 고용한 협동조합은 416개(55.7%)로 협동조합 당 평균 피고용인* 수는 5.1명으로 조사, 사회적협동조합은 1곳 당 16.2명을 고용
- * 피고용인 = 임직원(급여수급) + 자원봉사자(주 15시간 이상 근무)

□ 협동조합 재무상황

- '13.7월 기준 협동조합 당 평균자산은 약 4,000만원이고, 평균자산 중 조합원이 낸 출자금인 74%인 약 3,000만원
-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은 약 50만원

□ 자료조회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s.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에 활용('14~'16년, '13.12.27, 기획재정부)
 - 조합 수, 조합원 수, 평균자산, 목표매출액 등을 사용

- 협동조합 현황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분야를 추진하여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목표설정 과제로 사용

□ 2014년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 '14년까지 협동조합 취업자 수 3만명을 성과지표 목표로 설정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의 주요내용〉

□ 협동조합 실태조사 분석

- 시장진입, 물적자본, 인적자본,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존재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시장진입) 시장참여 기회 확대

-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활성화

(자금조달)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금융자원 활용

(인력양성)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연대·협력)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2 절

미래 창조과학부

1.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조사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2012년 12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활용
- 조사대상 : 전국 13,205개 지점(전국17개 시·도)
 - ※ 2009년~2013년 누적 수
- 조사사항 : 디지털방송 난시청 현황
- 개발개선 요구일 : 2009.4.2.(관련문서 통계심사과-976)
- 작성주기 : 1년
- 수신환경 조사 실시·분석('08.7.~'13.12)
 - 2009년부터 매년 DTV방송 수신환경 조사 결과 분석
 - 2009년(1,154개), 2010년(2,053개), 2011년(1,793개), 2012년(1,876개), 2013년(1,512개)
- 관련법령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법률 제9077호, 2008.3.28. 공포, 2008.6.29. 시행, 미래창조과학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실태 (디지털방송 난시청 현황)	통계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DTV 수신율 분석결과

- 최근 10년간('04~'13) DTV수신환경조사 총 13,205개 지점에 대하여 화질 평가에 의한 수신율 분석 결과 KBS1(96.2%)가 가장 높음
- 지역별 KBS1의 평균 수신율은 서울특별시가 99.6%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6개) 97.8%, 도(9개) 93.0%로 조사되었음
- 서울특별시와 제주도, 6개광역시는 수신율 90%이상으로 DTV전환이 대부분 완료 되었으며,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수신율이 낮게 나타나 빠른 개선이 필요

□ 난시청 분석결과

- KBS1수신율기준 전국 17,574,067가구 대비 난시청 666,859(3.8%) 가구로 추정
- 전국 수신율이 전년도 대비 0.4% 증가하여 시·도의 난시청 지역해소에 크게 기여함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디지털방송 난시청해소 지원

- 소출력중계기 구축(254개소), 마을공시청시설 개선·신설(497개소), 위성 수신기 보급(48,365가구) 지원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공시청설비 개선) 지원

- 공공임대공동주택(512단지), 민영공동주택(4,305단지), 단독/다세대주택(35,477세대)에 지원

제 3 절

교육부

1.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3. 수석교사 운영실태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진로교육목표에 따른 진로교육 성취기준과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개별 학교
- 조사사항 :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현황,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현황, 진로교육 만족도, 희망직업, 진로결정 요인, 직업인지도, 예산 현황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 5. 16.(관련문서 통계심사과-1561)
- 작성주기 : 1년('13년 10~11월 → '14년 6~7월로 조사시기 조정)
- 관련법령 : 진로교육진흥법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현황 - 진로 전용교실 설치 현황 - '진로와 직업'교과 선택 현황 -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현황 - 진로교육 시설 설치 현황 등 	통계개발계획 (교육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 진로수업, 진로진학상담 등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를 전담하며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총괄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학교 현황을 보면,
 - 중학교의 경우, 전체 79.9%의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지역별로 보면 세종 100.0%, 울산 98.4%, 대구 98.3% 순
 -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93.3%의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지역별로 보면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제주가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음

□ 진로 전용교실 설치 현황

- 일반교과 수업 교실 외에 진로 수업, 상담 등 진로활동 전용실 설치율을 보면,
 - 중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 36.7%로, 지역별로 보면 부산 76.5%, 제주 58.6%, 대전 58.2% 순
 -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 46.5%로, 지역별로 보면 경북 74.2%, 부산 72.5%, 세종 71.4% 순

□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현황

- 진로교과 과목인 ‘진로와 직업’ 채택은 전체 중학교의 88%, 고등학교의 73%의 학교에서 수업에서 선택교과로 활용하고 있음

□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현황

- 진로교육 주요 활동에 대한 참여 학교 현황을 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진로동아리 활동 29.5%, 진로 심리검사 89.1%, 진로상담 88.7%, 진로특강 66.0%, 진로 관련 견학 60.7%, 진로관련 현장체험에 73.3%의 학교가 각종 진로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진로진학상담 전담부서 운영 현황

- 진로진학상담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한 학교는 중학교의 65.0%, 고등학교의 83.9%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학교의 89.4%, 고등학교의 90.0%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진학상담부서의 부장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료조회 : 커리어넷(www.career.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진로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

- 매년 초에 수립하는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에 활용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진로활동 운영 현황,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로의식 등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인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 설정에 활용

□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진행 중)

- 조사대상인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의 대상별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 만족도, 진로의식 등 다양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정책 과제 및 방향 설정에 활용

□ 국정과제 성과지표에 활용

- 학부모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국정과제(68-5,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의 성과지표로 활용

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유아수용계획 수립으로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절한 수용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조사대상 : 만 5세이하 영유아 보호자
- 조사사항 : 만 5세이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및 취학 희망 유치원 유형 조사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6.7.(관련문서 통계심사과-1874)
- 작성주기 : 3년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2013.2.)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통해 유아수용계획 수립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유치원 취원 수요 현황 - 유치원 취원 희망여부 - 공·사립유치원 및 단병설유치원 선호 수요 등	유치원취원수요조사 (교육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유치원 설립 수

- '13년도 유치원 신생 설립은 140개원으로 국공립 52개원, 사립 88개원으로 조사
- '12~'13년 증가율은 1.6%로 '11~'12년(증가율 1.4%) 대비 0.2% 포인트 증가
 - 공립 유치원 증가율은 '11~'12년 대비 0.6% 포인트 증가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11~'12대비 0.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
 - ※ 국공립유치원 : ('11-'12년) 증 0.5%, ('12-'13년) 증 1.1%, 0.6% ↑
 - ※ 사립유치원 : ('11-'12년) 증 2.3% , ('12-'13년) 증 2.2%, 0.1% ↓

□ 유치원 원아 수

- '13년도 유치원 원아 수는 658,188명으로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142,052명, 사립 유치원 원아 수는 516,136명으로 조사
- '12~'13년 원아 수 증가율은 7.2%로 '11~'12년(증가율 8.7%) 대비 1.4% 포인트 감소
 - 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는 '11~'12년 대비 10.6% 포인트 증가한 반면 사립 유치원은 '11~'12대비 4.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
 - ※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 : ('11-'12년) 증 1.0%, ('12-'13년) 증 11.5%, 10.6% ↑
 - ※ 사립유치원 원아 수 : ('11-'12년) 증 10.9% , ('12-'13년) 증 6.1%, 4.8% ↓

□ 유치원 교원 수

- '13년도 유치원 교원 수는 46,126명으로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는 10,997명, 사립 유치원 교원 수는 35,129명으로 조사
- '12~'13년 교원 수 증가율은 9.2%로 '11~'12년(증가율 9.2%)과 동일
 - 공립 유치원의 교원 수는 '11~'12년 대비 2.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사립 유치원은 '11~'12대비 0.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
 - ※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 : ('11-'12년) 증 7.9%, ('12-'13년) 증 10.3%, 2.4% ↑
 - ※ 사립유치원 교원 수 : ('11-'12년) 증 9.7% , ('12-'13년) 증 8.9%, 0.8% ↓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 유치원 취학 수요에 부합되도록 유치원 설립인가 방식 전환 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12.8.31.)

□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시행

-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절차 및 방법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수용계획 수립 및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알림('13.2.26.)

3 수석교사 운영 실태

1 개요

- 조사목적 : 유치원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 및 국·공·사립 유치원의 수석교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현장 적합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
- 조사대상 : 지역별 수석교사
- 조사사항 : 지역별 수석교사 자격 수여자 수, 수석교사 교원 수(국·공·사립유치원, 시·도별), 원아수별 및 학급수별 수석교사 채용 현황(국·공·사립별, 시·도별)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 1. 11.(관련문서 통계심사과-74)
- 작성주기 : 매년(4월 1일기준)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22조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교사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수석교사 자격 수여자수 - 수석교사 수(국·공·사립별, 지역별) - 원아수별 및 학급수별 수석교사 채용현황(국·공·사립별, 지역별) 	통계개선계획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수석교사 운영 현황

- 일정규모(유아수가 101명 이상이거나, 5학급 이상인 유치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교사가 있는 유치원) 이상의 단위유치원을 중심으로 배치
- 활동 범위를 소속 유치원의 교사뿐 만 아니라 인근 소규모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지원까지 확대
- 배치현황 : 총 25명 중 2012년(14명), 2013년(8명), 2014년(3명)
 - 설립 : 공립 25명
 - 경력 : 평균 교육경력 : 26.0년
 - ※ 20년 이상(25%), 25년 이상(65%), 30년 이상 (10.0%)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2014년 수석교사 선발·운영 계획 수립(2013.11)

- 시·도교육청별 수석교사 현황에 따른 선발비율 적용시 활용
- 수석교사 현황 및 비율 활용
- 법령에 따른 엄정한 선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동료교원이 인정하고 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수석교사 선발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2014.4)

- 시·도교육청별 분포된 수석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활용
- 수석교사 평가 지표 개선방안에 활용

□ 수석교사 관련 통계 2013년 교육통계연보에 반영(2013.9)

□ 수석교사 운영의 장·단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2013.2)

□ 자료조회 :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제 4 절

안전행정부

1.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2.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 보행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된 보행자길
- 조사사항 : 보행자전용길 지정 현황(지역·지정시기·유형별 분류)
- 개발개선 요구일 : 2010.08.06.(관련문서 통계심사과-2333)
- 작성주기 : 1년
- 지자체별 보행자전용길 지정 대상지 선정 및 지정 추진('13.4월~)
 - 보행자전용길 지정개소 : 1개소
- 관련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1339호, 2012.2.22. 제정, 2012.8.23. 시행, 안전행정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길 설치현황 - 도로폭, 총연장, 보행자전용길 지정수 	통계개발계획 (안전행정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보행자길 지정 수
 - 경기도 양주시에 1개 지정 완료
 - 도로폭 3.3m, 총연장 0.105km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시·도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시·도별로 기본계획 수립예정

- ※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2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 보행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시·도 및 시·군·구 관할 구역 내의 보행환경개선지구
- 조사사항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지역·지정시기·유형별 분류)
 -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실적
- 개발개선 요구일 : 2010.08.06.(관련문서 통계심사과-2333)
- 작성주기 : 1년
- 지자체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 및 지정 추진('13.4월~)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개소 : 19개소
- 관련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1339호, 2012.2.22. 제정, 2012.08.23. 시행, 안전행정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지역별)	통계개발계획 (안전행정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수

- 전국 19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 서울 5개소, 경북 4개소, 대구 3개소, 경기 2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시·도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시·도별로 기본계획 수립예정

※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식 함양 및 홍보

제 5 절

문화체육관광부

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2. 이스포츠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파악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 지자체에 등록된 전국 작은도서관
- 조사사항 : 예산 현황,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04.02. (관련문서 통계심사과-991)
- 작성주기 : 1년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실시('12.11월)
- 관련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법률 제11316호, 2012.2.17. 제정, 2012.8.1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주체별,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수 - 도서자료수, 도서관면적, 좌석수, 직원 및 예산 현황, 개관일수, 개관시간, 이용자수, 대출권수 등 	통계개발계획 작은도서관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작은도서관 수

- 2012년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수는 3,951개로 이중 공립 894개, 사립 3,057개로 나타남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98개로 가장 많으며 서울특별시 522개, 경남 330개 순으로 나타남

□ 작은도서관 시설

- (전용 면적) 공립 153.1㎡, 사립 99.7㎡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약 1.5배 넓은 것으로 나타남
- (열람석) 공립이 32.7석 사립이 29.6석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사립보다 3석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작은도서관 직원

- (직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7.2명, 사립 작은도서관이 6.6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많았음

□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보유하고 도서수는 평균 8,791권,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4,795권으로 약 2배 정도 공립 작은도서관이 높게 나타남

□ 작은도서관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 (운영일수) 공립 작은도서관의 50%이상이 6일 이상 운영하고 있었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6일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낮게 나타남. 사립 작은도서관보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일수가 많았음
- (운영시간)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일에는 평균 8.7시간,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7시간 운영되고 있음. 평일 및 주말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사립 작은도서관 보다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높았음

□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

- 2012년 중 연간 총 이용자 수는 공립 10,446천명, 사립 10,905천명으로 나타남

-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주중의 경우 공립 56명, 사립 20명이며 주말의 경우 공립 52명 사립 27명으로 나타남

□ **작은도서관 도서대출권수**

- 외부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의 비율이 전체 작은도서관 중 80.7%로 이며, 도서대출권수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약 18,617,533권, 사립 작은도서관이 9,421,129권으로 나타남

□ **자료조회 :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계획 수립**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정보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소규모의 독서 문화서비스 시설 제공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계획의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방향**

-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및 전국 읍·면·동에 작은도서관 1개관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 지원 방안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 ~ 12월
- 사업규모 : 40개관 내외 조성 지원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26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14개관 내외
- 지원내용 : 국고 50%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70% (최대 70백만원 이내) 지원
 -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율 이내에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문체부에 신청

2 이스포츠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1 통계 개발개선

- 조사목적 : 이스포츠 관련 구체적인 동향과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스포츠 진흥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이스포츠 게임단 및 프로그래머 등
- 조사사항 : 이스포츠 게임단 및 프로그래머 현황 등
- 작성주기 : 1년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04.26. (관련문서 통계심사과-1318)
- 이스포츠 실태조사 완료('13년)
- 관련법령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1315호, 2012.2.17.
제정, 2012.8.1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포츠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단 및 프로그래머 수- 연도별, 지역별 대회 현황 및 관람객 수- 종목 현황	통계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이스포츠 관련기관 수

- 이스포츠 협·단체 6개, 지방 단체 13개의 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스포츠 관련 학교 2곳에서 60여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음

□ 이스포츠 관련 미디어 수

- 이스포츠 웹진으로 8개 커뮤니티가 활동하며, 중계 및 제작 미디어 4개사가 이스포츠 중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음

□ 이스포츠 게임단 및 프로그래머 수

- 이스포츠 게임단 19개, 프로그래머 수 108명

□ 이스포츠 국내대회 및 종목수

- 2012년 기준 이스포츠 대회는 총 75회 개최되었으며 이 중 한국 이스포츠 대회 주관 공인대회는 22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남
- 이스포츠 종목 수는 14개 종목이 치뤄졌음

□ 이스포츠 국제대회 및 종목수

- 2012년 기준 국제 이스포츠 대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13개의 종목이 치뤄졌음

□ 이스포츠 국제단체 수

- 국가별 이스포츠 단체는 40개국 이 자국의 이스포츠 협·연맹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모두 국제이스포츠 연맹에 가입되어 있음

□ 자료조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4년 12월 중 수립 예정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법 제6조)
 -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실시
 - 2009년 이후 총 5회 실시

제 6 절

농림축산식품부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
2.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 현황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 농자재업체에 공인된 농자재 관련 정보 제공
- 조사대상 : 유기농업용자재
- 조사사항 : 유기농업자재 제조사, 제품명, 원료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실적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4.27.(관련문서 통계심사과-1154)
- 작성주기 : 공시 및 품질인증 시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1459호, 2012.6.1.공포, 2013.6.2.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유기농어업용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	통계개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공시 품질인증 : 1,297개(2014. 7월 현재)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유기농업자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기준 제정 고시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품목을 게재하여 민원인 등 이용자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

2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의사를 긴급 동원하여 국가방역활동의 효율적 수행 등에 활용
- 조사대상 : 수의사
- 조사사항 :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 현황, 전문분야별 특기 현황(필요시)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12.26.(관련문서 통계심사과-3661)
- 작성주기 : 수시
- 관련법령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시행령 제23540호, 2012.1.25.공포, 2012.1.26.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 취업 현황 - 수의사 취업 실태, 지역별 수의사 현황 등 	통계개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수의사 신상 동태

- 수의사 면허 발급인원 총 16,301명(2012.8.15~2013.3.12)으로 신고자는 11,481명(70.4%), 사망·이민·신원 미상 등은 2,636명(16.2%), 미신고자는 2,184명(13.4%)

□ 신고 수의사 활동 상황

- 신고 수의사의 활동 상황으로는 임상분야 종사 4,939명(43.0%), 공무원 2,169명(18.9%), 수의관련 사업 867명(7.6%) 순임
- 소속 지부별 분포는 서울 2,763명(24.1%), 경기 2,432명(21.2%), 대전·충남 967명(8.4%) 순임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대규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의사를 긴급 동원하는 등의 정책 활용실적은 없으나 향후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동원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음
- 매년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에 대한 의무교육(연 10시간) 시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대한수의사협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제 7 절

산업통상자원부

1. 뿌리산업 관련 통계조사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뿌리산업 관련 통계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뿌리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
- 조사대상 : 뿌리산업 기업체
- 조사사항
 - (뿌리산업 현황) 업종별/연도별 사업체 수, 종사자수, 매출액, 생산성, 원재료 소비량, 생산량, 수출입 현황 등
 - (뿌리산업 인력실태) 인력실태 및 특성,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 변화, 임금 등 근로조건, 여성·외국인·비정규직 고용 현황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11.03.(관련문서 통계심사과-3154)
- 작성주기 : 매년
- 뿌리산업 실태조사 실시('12.12.14~'13.1.18) 및 완료('13.7)
- 관련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7.25. 제정, 2012.1.26.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 생산성, 제품단가 원재료소비량, 생산량, 수출입 현황 등 ○ 뿌리산업 인력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실태 및 특성,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 변화, 임금 등 근로조건, 여성·외국인·비정규직 고용 현황 등 	통계개발계획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뿌리기업 수(2013년 기준)

- 사업체수(사례수)는 26,013개이며 분야별로는 표면처리 6,383개, 금형 6,333개, 용접접합 5,639개, 소성가공 5,585개, 주조 1,226개, 열처리 847개 순

□ 종사자 수(2013년 기준)

- 종사자 수는 약 416천명이고, 그중 근로계약종사자가 98.5%, 도급종사자가 1.2%, 파견종사자 0.3%

□ 매출액(2012년말 기준)

- 전체 매출액은 약 91조 4,668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용접 38.3%, 표면처리 26.8%, 소성가공 15.5% 순
-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3,516백만원이었고, 업종별로는 용접 분야가 6,204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수출액(2012년말 기준)

- 전체 수출규모는 약 17조 7,550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용접이 8조 2,009억원(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업체당 평균수출액은 11,057백만원이었고, 표면처리 분야가 22,024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총 매출 중 내수부분이 80.1%, 수출이 19.9%를 차지

□ 생산액(2012년말 기준)

- 전체 생산액은 약 89조 1,27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용접이 33조 4,390억원으로 37.5%를 차지
- 업체당 평균생산액은 3,426백만원이었고, 용접분야가 5,930백만원으로 가장 높음

□ 인력구성(2013년 기준)

- 인력구성은 근로계약 종사자 98.5%, 도급 종사자 1.2%, 근로자 파견 종사자 0.3% 순

- 직무별로는 기능인력이 45.0%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 23.5%, 노무인력 17.2%, 기술인력 10.8%, 연구인력 2.6% 등의 순

□ 인력수요(2013년 기준)

- 최근 1년간 이직자 수는 약 2.8만명이며, 직무별로는 기능인력이 59.3%, 노무인력 25.5%, 사무관리직 8.6% 등으로 나타남
- 현재 인원(근로계약)은 약 409천명이고 부족인원은 약 1.1만명으로 인력 부족률은 2.6%로 나타났고, 2014년에 약 1.1만명을 채용할 계획

□ 임금 등 근로조건(2013년 기준)

- 평균급여액은 3,107만원, 업종별로는 ‘주조(3,264만원)’가 가장 높고, ‘금형(2,869만원)’이 가장 낮음
- 연간급여액 : 내국인종사자 3,185만원, 외국인근로자 2,131만원, 상용근로자 3,197만원, 임시 및 일용근로자 2,228만원로 나타남

□ 외국인 및 비정규직 고용 현황(2013년 기준)

- 직무별 외국인종사자는 기능인력 53.1%, 노무인력 44.4%, 기술인력 1.5% 순
- 직무별 도급·근로자파견 등의 인력은 기능인력 59.5%, 노무인력 24.7%, 기술인력 13.2% 순

□ 사업 애로사항(2013년 기준)

- (전반적 애로사항) ‘자금조달’이 31.9%로 가장 많았고, 인력수급 24.9%, 영업활동 20.4%, 기술개발 활동 9.4% 순
- (인적자원) ‘임금수준’이 25.6%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의 부족 17.6%’, ‘열악한 작업 환경 13.4%’ 순

□ 파일럿 플랜트 활용 수요(2013년 기준)

- (시제품 생산방법) ‘시제품 생산경험 없음’이 74.2%로 가장 많았고, 회사내 장비활용 24.0%, 외부기관 활용 1.8% 순
- (외부기관 활용 시 애로) ‘높은 비용’이 48.3%로 가장 많았고, ‘활용할만한 외부기관 없음 23.4%’, ‘외부기관 전문인력 부족 12.8%’ 순
- (향후 활용 의향) ‘활용 의향 있음’이 2.7%, ‘없음’이 93.7%로 나타남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14.3.5, 산업통상자원부)

-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부족*한 실정이고, 그중 기능인력(부족률 4.8%)과 기술인력(부족률 4.7%) 부족 심각
 - * '12년 수요 30.9만명, 공급 29.5만명, 부족 1.4만명(부족률 4.6%)
-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 → 비자종류 변경(E-7)해 연간 100여명 규모 이내에서 시범사업 실시('15~'17년)

□ '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 통계조사 결과표나 수치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없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정리

- '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14.3.5, 산업통상자원부)
 - (파일럿 플랜트 구축) 7개 뿌리기술지원센터에 공동 활용 파일럿 플랜트 장비 총 42종 구축 지원(163.4억원)

〈'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14년도 주요 정책방향

- 인력·입지애로 문제의 적극적 해소, 첨단뿌리기술 확보를 위한 R&D제도 개선 등을 통해 뿌리산업의 첨단화 기반 조성

□ '14년도 주요 추진계획

- 뿌리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현장지원체제 개편, 뿌리산업 지원기능 강화 등
- 뿌리기술 R&D시스템 구축
 - 뿌리기업의 R&D 참여비중 확대 등

- 뿌리기업 공정혁신 촉진
 - 자동화 공정 구축, IT융합을 통한 첨단화 등
- 뿌리인력 선순환 구조 정착
 - 뿌리산업 인력양성정책 본격 추진 등
-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
 - 뿌리기업의 집적화, 뿌리산업단지의 고도화 지원 등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8 절

보건복지부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현황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3. 의료분쟁조정·중재 현황
4. 자살실태조사
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기관 현황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인력·시설, 입주기관의 지원현황 분석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첨단의료단지 내 의료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지원기관
- 조사사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인력, 시설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08.6.20.(관련문서 통계심사과-1214)
- 작성주기 : 1년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09.8.~'13.11.)
- 관련법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행령 제20869호, 2008.6.25. 제정, 2008.6.29. 시행, 보건복지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및 지원 현황 - 연구개발 입주기관 수, 종사자 수, 지원금 등	통계개발계획 (보건복지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 2013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총 28개(충북 오송 18개, 대구 경북 10개)이며, 단지 분양계획은 240개 기관
 - 단지조성 면적은 총 2,161천㎡(오송 1,131천㎡, 대구경북 1,030천㎡)
 - 핵심시설 건립면적은 총 96,921㎡(오송 45,414㎡, 대구경북 51,507㎡)
 - 사업비는 총 2,304억원(오송 1,088억원, 대구경북 1,216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필수인력 충원

- 2013년말 첨단복합단지 내 필수요원 충원은 총 178명이며, 신약개발지원센터 48명(27.0%),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46명(25.8%)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금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총 투자비는 8,168억원이며, 그중 정부·지자체·재단의 투자비는 7,796억원, 민간 372억원
 - 총 투자비 중 시설·운영 90.3%, R&D·기금조성 9.7%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예상 총 투자비는 10,841억원이며, 그중 정부·지자체·재단의 투자비는 5,258억원, 민간 5,583억원
 - 예상 총 투자비 중 시설·운영 82.2%, R&D·기금조성 9.7%

□ 자료조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 활용('13.12.8. 보건복지부)
 - 입주기관 수, 단지조성 면적, 사업비, 종사자 수, 지원금 등을 사용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14~2016년)의 주요내용〉

□ 핵심인프라 활용도 제고

- 신약개발 병목 단계인 후보물질 최적화 분야 집중 지원 및 공동연구
- 개발단계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시험검사 등 수행 및 공동 연구
- 모델동물, 첨단영상분석 등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의 생체내 평가와 의료기기 전임상시험 지원
- 비임상·임상시험용 시료의 효율적 생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제품화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강화

- 센터와 외부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개발 기능 강화
- 신약개발 병목 단계인 후보물질 최적화 연구 중점 지원
- 임상신약 제조공정개발 및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

- 단지 특성에 맞는 우수 의료제품 연구개발기관 유치
- 초기 성과 가시화를 통해 입주동기 유발 및 적극적 투자 분위기 조성
- 국내외 우수한 인재 유치를 통해 재단의 R&D 역량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고급 연구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주여건 제공 등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에 따른 유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대상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조사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판매장소 수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8.24.(관련문서 통계심사과-2416)
- 관련법령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11421호, 2012.5.14. 개정, 2012.11.15.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 판매자 등록 수 및 판매장소 수	통계개발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안전상비의약품 대상 품목
 - 안전상비의약품 대상 품목은 총 13종이며, 그중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현황

- 2013. 3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수는 총 19,994개소
 - 지역별로는 경기 4,757개소(23.9%), 서울 4,564개소(22.9%)로 전체의 9,321개소(46.7%)를 차지
 - 편의점별로는 CU 6,356개소(31.9%), GS 25시 5,627개소(28.2%), 코리아세븐 5,401개소(27.1%) 순
- 전국편의점 수는 총 24,521개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업체는 19,944개소(81.3%)로 편의점 대부분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도서·농촌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보

- 국민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의 폐문으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
-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에서는 보건진료소 1,907개소(2012.11. 현재)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
 -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 장소 220곳(2012.11. 현재)을 추가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서비스

- 소비자가 위치한 주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를 쉽게 검색 할 수 건강정보 APP(application)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 ※ 건강정보>안전상비약품판매처>지역별/편의점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찾기 서비스

3 의료분쟁조정·중재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현황 및 의료사고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료분쟁 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사항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조정개시, 성립(판정) 건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건수 및 보상액, 손해배상금 대불건수 및 대불액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12.12.(관련문서 통계심사과-3532)
- 작성주기 : 1년(2013년부터)
- 관련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23708호, 2012.4.6. 제정, 2012.4.8. 시행, 보건복지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현황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성립(판정)건수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건수 및 보상액 - 손해배상금 대불건수 및 대불액	통계개발계획 (보건복지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현황(2012.4.9~2012.12.31)
 - 2012년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건수는 총 503건 중 조정 502건(99.8%), 중재 1건(0.2%)로 나타남

- 분쟁 신청은 일반인 498건(99.0%), 보건의료기관 5건(1.0%)이며, 남성 300건(59.6%), 여성 203건(40.4%)
- 연령별로는 40대 146건(29.0%), 50대 111건(22.1%), 30대 110건(21.9%) 순
- 의료유형별로는 의과 434건(86.3%), 치과 48건(9.5%), 한의과 19건(3.8%), 약학 2건(0.4%)
- 내과 107건(21.3%), 정형외과 85건(16.9%), 치과 48건(9.5%), 외과 43건(8.5%) 순으로 나타남
- 조정중재 신청금액
 - 신청 건수는 100만원~1,000만원미만 192건(38.2%), 1,000만원~3,000만원미만 103건(20.5%), 5,000만원~1억원미만 69건(13.7%)
 - 신청 금액은 총 216억 6,643만원이며, 1억원이상 61.7%로 가장 많고, 5,000만원~1억원 18.9%, 3,000만원~5,000만원 7.9%

□ 손해배상금 대불건수 및 대불액(2012.4.9~2012.12.31)

- 2012년 손해배상금 대불건수는 1건에 350만원

□ 자료조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의료분쟁 피해구제 제도의 대국민 홍보

- 2012. 4월~2012년말까지 제도도입 이후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건수 및 보상금액 등 대국민 홍보
 - 통계연보 발간 및 보도자료 제공('13.9.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사고 발생규모 파악

- 의료중재원은 국내 의료사고 발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 외국연구 사례를 인용하여 추정하였으나,
-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원인 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

4 자살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자살실태 변화추이, 자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자살예방 서비스 등 자살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 조사대상 : ①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실태조사 1,500명
 ②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1,500명
 ③자살사망자 유가족 72명
- 조사사항 : 지역·성·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소득수준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12.2.(관련문서 통계심사과-3434)
- 작성주기 : 5년마다
- 자살실태조사 실시('13.5.~11.) 및 완료('14.3.)
- 관련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령 제23679호, 2012.3.26. 제정, 2012.3.31. 시행, 보건복지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자살예방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실태조사 - 지역·성·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소득수준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등 	통계개발계획 (보건복지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자살자 수 및 자살원인

- 2012년 연간 사망자 수 중 자살이 14,160명이며 순위가 4위이고,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자살 원인은 정신과적 증상 37.9%, 대인관계 31.2%, 경제적 문제 10.1%, 외로움(고독) 7.1%, 신체질병 5.7%, 기타 8.1% 순
- 자살시도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질환의 비중이 50세~69세 48.8%, 70세이상 73.2%로 높게 나타남

□ 자살기도 방법

- 자살 사망자의 자살수단은 약물음독 55.9%, 칼등 14.0%, 농약음독12.2%, 가스음독 8.2% 등이 순
 - 농약음독은 70세이상 34.0%, 10~29세 1.1%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음
 - 칼등 날카로운 물질을 이용한 자살은 70세이상 5.6%, 10세~29세 23.1%로 20~40대에서 높게 나타났음

□ 자살생각

- 자살시도자의 자살 충동은 일주일에 2~5번 34.9%로 가장 많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여러번 자살충동이 드는 비율이 28.7%
 - 자살생각의 지속시간은 1시간 미만 38.3%, 1~4시간 27.5%, 순간적 23.2% 순으로 나타남
 - 자살시도자의 자살 통제력은 약간 힘들 39.1%, 통제가 많이 힘들 30.1%이며, 통제가 쉽다는 7.6%

□ 자살에 대한 태도

문항	동의	동의하지 않음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	57.2	17.3
대부분의 자살 시도자는 충동적인 행동이다	70.5	16.8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	43.5	35.9

누군가 자살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42.8	30.8
외로움은 나에게 자살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47.9	35.1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살에 대하여 한두 번 생각을 한 적이 있다	47.6	25.4
사람들을 자살로 내모는 것은 주로 외로움이다	59.5	21.9

□ 자살사망자 유형

- 자살사망자의 유형은 정신과적 문제 31.0%, 급성 스트레스 26.8%, 만성 스트레스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급성 스트레스 유형 : 자살 12개월 이내 발생한 경제·대인 스트레스 등 특정 사건으로 인해 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만성 스트레스 유형 : 질병, 폭력, 학대, 빈곤 등의 만성적 스트레스가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촉발 사건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
▷ 적극적 자해/자살시도 표현 유형 : 절망감 등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의도를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해 및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정신과적 문제 유형 : 하나 이상의 정신과적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사건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자료조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www.mw.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2014년말 활용예정)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 자살자 수, 자살원인,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태도, 자살사망자 유형 등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의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주요내용

-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등

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기관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및 제공기관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통계
- 조사사항 : 제공기관 품질평가 결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제공기관수 현황, 사업별 종사자수 현황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09.21.(관련문서 통계심사과-2668호)
- 작성주기 :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별 매 3년마다 평가
(제공기관 및 종사자 통계) 매년 1회
- 제공기관 품질평가 실시('12.) 및 제공기관 및 종사자 통계 작성('13.)
-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법률 제10998호, 2011.8.4. 공포, 2012.2.5. 시행, 보건복지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기관 현황 - 제공업체의 품질등급별 업체수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예산, 이용자 수, 제공기관 수, 종사자 수 현황 등 	통계개발계획 (보건복지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13.06.기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수요자 지원방식을 통해 돌봄·재활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07년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시작으로 '13년 기준 7개 사업에 총 예산 약 1조원이 투입되어, 7천6백여개의 제공기관에서 제공 인력 7만6천여명이 51만여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자료조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예산, 이용자수, 제공인력, 제공기관 통계 활용)

□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전면 실시('13.07.)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 등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지원, 포괄보조* 방식 도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

* 포괄보조 :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

- 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에 대한 처분 신설, 서비스 제공비용 사전 심사 제도 도입, 서비스 제공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등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9 절

환경부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2.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실태조사
3. 지질공원 현황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를 축적하여 환경보건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국민
- 조사사항 : 주거 및 실내외 환경의 유해 오염 물질 노출 현황, 생체 내 혈액 및 요 중 유해물질 농도
- 개발개선 요구일 : 2008.12.18.(관련문서 통계심사과-1137)
- 작성주기 : 3년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 제1기('09~'11) 환경유해물질 16종
 - 제2기('12~'14) 환경유해물질 21종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정(법률 제8946호, 2008.3.21. 제정, 2009.3.22. 시행, 환경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 지역별, 연령별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 환경성질한 유병률 - 지역별, 연령별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국내 최초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조사대상 약 70%에서 화학물질 16종 모두 검출

- 혈중 수은, 소변 중 카드뮴의 농도 평균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
- 혈중 납, 무연휘발유 보급 정책 도입으로 1988년의 34.3 µg/dL, 1993년의 3.9 µg/dL 보다 낮은 1.77 µg/dL로 나타남
- 비스페놀 A는 미국 및 캐나다에 비해 낮았으며, 20~3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인체 내 유해화학물질 16종**의 농도를 조사

** 중금속(납, 망간, 수은, 카드뮴, 비소) 5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대사체 2종, 비스페놀 A 등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3종,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대사체 1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5종 등

□ 자료조회 : 환경통계포털(stat.me.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제1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심층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13~)

- 제1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09~'11, 3년간)를 통하여 노출경로 평가 및 사회·경제변수 등을 고려한 인체노출 심화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 저감 방안 등 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수립

- 국가인체노출 평가체계 강화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항목 및 대상 확대 추진, 조사방법 표준화 및 웹기반 조사지원시스템 구축

2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야생 생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지정 야생생물보호 구역
- 조사사항 :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실태
 -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현황
 - 보호구역 조사·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 그 밖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 개발개선 요구일 : 2010.5.4.(관련문서 통계심사과-1330)
- 작성주기 : 1년
- 야생생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12. 8.)
-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977호, 2011.7.28. 공포, 2012.7.29. 시행, 환경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실태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 2012년 기준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전국에 405개소이며, 면적은 893.28km²로 조사됨
- 시도별 현황은 경남이 84개소, 267.64km²로 가장 큰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음

자료조회 : 환경부(www.me.go.kr), 환경통계포털(stat.me.go.kr)

4 구체적 정책 활용 사례

제2차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 계획(2011~2015)

- 보호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정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보전대책 강구
-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보호구역 우수 지정·운영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법 제58조 참조)
- 조류 및 포유류 뿐만 아니라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동·식물 종 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함

3 지질공원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국가지질공원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질명소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지질공원 탐방에 활용하며 국제적 지질관광 명소화
- 조사대상 : 국가지질공원
- 조사사항 : 지질공원 인증 현황,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현황, 지질공원 탐방객 수 현황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12.01.(관련문서 통계심사과-3423)
- 작성주기 : 매년
-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제10978호, 2011.7.28. 공포, 2012.1.29. 시행, 환경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지질공원 현황 - 공원별 구역, 면적, 주요 지질명소, 탐방객수 등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 지질공원해설사 현황(공원별)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황
 - 국가지질공원 인증 수는 총 5개로 '12년 2개(제주도, 울릉도·독도), '13년 1개(부산), '14년 2개(청송, 강원평화지역) 인증

- 제주도 : 면적 1,864.4km², 수월봉 등 지질명소 10개소
- 울릉도·독도 : 면적 127.9km², 봉래폭포 등 지질명소 23개소
- 부산 : 면적 151.48km², 오륙도 등 지질명소 12개소
- 청송 : 면적 175.26km², 연화굴 등 지질명소 17개소
- 강원평화지역 : 면적 2,067.07km², 철원 용암대지 등 지질명소 21개소

〈그림1〉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황

<p>제주도(' 12.12.27. 인증)</p>	<p>울릉도·독도(' 12.12.27. 인증)</p>
<p>부산(' 13.12.6. 인증)</p>	<p>청송(' 14.4.1. 인증)</p>
<p>강원평화지역(' 14.4.1. 인증)</p>	

□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현황

- 자격증 취득인원은 102명이고 이중 75명이 활동
 - 자격증 취득인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울릉 20명, 광주 13명, 태백·청송·제주 각 12명 순
 - 운영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울릉 14명, 광주 12명, 청송·부산 각 10명 순
-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인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13년은 소양교육 86명, 전문교육 72명, 자격증 71명 양성
 - '14년 1~7월까지의 소양교육 30명, 전문교육 33명, 자격증 31명 양성

□ 제주 지질공원 탐방객 수 현황

- 제주 지질공원 탐방객 수는 '12년 923만명에 비해 '13년 978만명으로 전년대비 5.9%증가
 - 내국인은 '12년 733만명에 비해 '13년 742만명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 외국인은 '12년 190만명에 비해 '13년 235만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
- 주요 탐방지로는 천지연, 중문 주상절리, 한라산, 일출봉으로 이들이 전체 탐방객 수의 약 81%정도 차지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국가지질 탐방로 기본계획 수립 예정

- 국가지질 탐방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현재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에서 정책연구 용역중으로 '14년 9월 용역 완료후 구체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예정

□ 지질공원 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에게 기초자료 제공
 -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질공원망(www.koreageopark.kr)에 현재 자료는 미미하나 지속적으로 자료 축적 예정

국가지질탐방로(National Geotrail)

□ 목적

- 다양한 지질관광 프로그램 및 특성화, 지역경제 발전 도모 등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지질탐방로 개발 및 지정

□ 사업내용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질명소와 문화, 관광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국가지질탐방로 개발·운영
 - '13년 100대 지질명소 + '14년 발굴예정 지질명소 중심으로 지정
- '17년까지 수도권 등 5대 권역*에 국가지질탐방로 총 1,000km (권역별 200km) 지정 → 자연과 인문 혜택 극대화
 - ※ 미국 국가경승로(National Scenic Way)를 모델로 운영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고품격 녹색관광지로 격상
- 지질탐방로 조사 및 선정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은 문광부가 주관하여 부처협업 사업으로 추진

□ 추진계획

- 2014년 : 국가지질탐방로 기초조사 및 지정방안 마련
- 2015년 :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지질탐방로 지정
- 2016년~2017년 : 안전표지판 등 탐방 인프라 구축
- 2017년 : 국가지질탐방로 1,000km 운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공공하수도 설치 국가지원 예산편성 및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조사사항 : 지역별 현황, 위치 현황, 용량별 현황, 처리공법 현황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5.22.(관련문서 통계심사과-1645)
- 작성주기 : 매년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1915호, 2013.7.16. 공포, 2014.7.17. 시행, 환경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지역별, 설치용량별 등	통계개발계획 (환경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총 18개소중 2개소 완료, 11개소 진행, 5개소 취소
 - 2개소 사업 완료(청원군 문의, 품곡 처리장)

- 11개소 사업 진행중(화도, 춘천, 청주, 부여, 양산, 창녕·남지, 연무, 서천, 담양, 강촌 처리장)
- 5개소 사업 취소(밀양, 영동, 금산, 함양, 고령 처리장)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편성 기초자료 활용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14년도 국가지원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총사업비를 살펴보면 청주가 1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 195억원, 화도 171억원, 양산 94억원 순
 - '14년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양산이 61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 57억원, 화도 50억원, 춘천 37억원 순

제 10 절

여성가족부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경력단절여성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의 추진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조사대상 : 결혼,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비경제활동 중인 여성 또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여성 등
- 조사사항
 - 경력단절여성현황(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학력, 경력단절 사유·기간)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실태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08.10.10.(관련문서 통계심사과-2415호)
- 작성주기 : 3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13.5.14.~5.28.) 및 완료('13.10.15.)
- 관련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시행령」 제정(법률 제9101호, 2008.6.5. 공포, 2008.12.6. 시행, 여성가족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현황(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경력단절 사유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효과에 대한 인지도 	통계개발계획 (여성가족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경력단절 경험 여성 현황

- 조사대상 5,854명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이고, 취업경험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3,185명(58%)
 -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여성은 1,548명(48.6%), 비취업 여성은 1,637명(51.4%)
-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으로 조사시점 기준 취업과 비취업 상태의 여성을 포함

□ 경력단절 사유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63.4%), 임신·출산(24.7%), 가족 돌봄(4.9%), 미취학자녀 양육(5.9%), 취학자녀 교육(1.1%) 순임

□ 경력단절여성 취업실태

-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2,112명(66.3%), 경력단절 후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 여성은 1,073명(33.7%)
 -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일자리를 이직없이 유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875명(41.4%), 재취업 후 다시 경력이 단절되어 비취업 상태인 여성 비율은 564명(26.7%)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경우 '제조업'은 줄고(33.9%→16.8%), '도소매업'이 다소 늘어나며(17.0%→20.9%), '숙박 및 음식점업'은 3.8배로 늘어남(2.8%→10.7%)
- 경력단절 당시보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사무직'은 크게 줄고(39.4%→16.4%), '서비스판매직' 비율은 2.5배로 늘어남(14.9%→37%)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58.6%로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87.2%)보다 줄어듦
- 경력단절 경험 취업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149.6만원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 임금(소득) 204.4만원의 73.2%수준임(월 평균 54.8만원의 차이 발생)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태

-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은 8.4%이며, 재취업 이후 비취업 상태인 여성(6.2%) 보다 취업상태인 여성이 높음(9.3%)

□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창업 지원기관 등록 현황

-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창업 지원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16.8%이며, 재취업 경험 없는 여성(11.1%)보다 재취업 경험 있는 여성(25.8%)이 높음

□ 경력단절여성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선호도

-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이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새일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48.3%)가 가장 많고, 다음은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기관’(26.3%)임
- 45세 이상 연령대의 새일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선호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 정책 수요

-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 정책 수요(복수 응답)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23.6%),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19.0%) 순임
-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수요(복수 응답)는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32.2%),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지원’(29.8%), ‘장시간근로문화개선’(26.2%), ‘유연근무제 확대’(22.0%),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지원’(22.3%),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21.3%) 순임

□ 자료조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기본계획(2015~2019) 수립에 활용
 - 경력단절여성 현황, 취업실태,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재취업을 위한 정부 정책 수요조사 결과 등을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유형별 여성 새일센터 10개소 2014년 하반기 시범운영 실시
 - 경력개발형 3개, 자립지원형 2개, 농어촌형 2개, 지역산업맞춤형 3개
 - 취업·창업 지원기관 등록 비율, 새일센터 선호도 등 활용

□ 2014년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지원 정책 주요내용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정보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취업모, 저소득 한부모 등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돌봄 연령 : ('13) 만 0세(3~12개월) → ('14) 만 1세 (3~24개월)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심야·주말·도서벽지 등 활동 인센티브 제공 ○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지표 강화, 중소기업 인증 확대,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 역량 강화 및 유형별 새일센터 시범운영(1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고용유지, 서비스 질 등 평가 및 환류 강화 ○ 전문기술훈련 및 기업맞춤형 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68개 과정(10%) → '14년 86개 과정(15%) ○ 경력단절 단계별 온라인 교육·상담 (www.dream.go.kr)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재취업자 경력개발교육 등 실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직종 개발 ○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자 노무상담·멘토링, 고용유지 현황조사,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 등

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
- 조사대상 : 전국 한부모가족(이혼, 사별, 미혼, 별거 등)의 가구주와 자녀 등
- 조사사항
 -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자녀양육비, 소득, 경제활동, 건강 및 주거상황에 관한 사항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1.08.30.(관련문서 통계심사과-2476호)
- 작성주기 : 3년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실시('12.10.~'13.02.) 및 완료('13.3.8.)
-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제10582호, 2011.4.12. 공포, 2012.1.1. 시행, 여성가족부)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연령별·성별·가족현황 - 부 또는 모 세대주별 일반현황 - 한부모가구 형성에 관한 상황 - 한부모가구 경제 상태·주거, 취업, 월평균 수입 등 	통계개발계획 (여성가족부)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가구의 일반적 특성

-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약 57만가구로 추정되며, 모자가구 63.1%, 부자가구 36.8%
-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7세이며, 40대 63.7%, 30대 21.4%, 50대 14.9%
-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이혼 76.4%, 사별 18.2%, 기타 5.3%
- 평균 가구원 수 3.1명이며, 평균 자녀수 1.7명
- 전체응답자 중 일반가구 69.6%, 차상위 계층 18.2%, 기초생활수급자 12.2%

□ 아이돌봄

- 미취학 자녀의 경우 시설보육 이용률 82.2%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학원 등 69.4%

□ 자녀양육비

-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정기 지급받는 경우 5.6%, 전혀 받지 못한 경우 83.0%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한 경우 6.3%)
- 전 배우자의 정기/부정기 양육비의 월 평균은 61.8만원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4.6%이며, 그중 양육비 지급판결 77.2%, 판결대로 양육비 지원 22.6%

□ 소득

- 월평균소득은 172만원이며, 100만원미만 16.7%, 100~200만원미만 51.8%, 200만원이상 31.4%

□ 경제활동

- 한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이 86.6%를 차지
- 한부모의 지난 1주일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 및 일용 근로자 41.7%,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16.3%
- 한부모의 1일 근로시간은 10~12시간 44.4%, 13시간이상 7.0%

□ **건강 및 주거실태**

- 우울증세 경험 있음 24.5%(해소방법 : 대부분 혼자 참거나 술로 해결)
- 주거지의 형태가 자가 23.5%, 전세 19.5%, 월세 23.3%, 공공임대 15.0%

□ **자료조회**

- 연구보고서 : 안전행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통계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한부모가족 정책 개선방안 도출('13.03.)**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돌봄체계 강화 등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 가족구조별 맞춤형 급여지원체제로 개편
- 양육비이행지원 정책개선방안 마련
-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
-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강화 등

□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13.12.), 미혼모 지원 대책('13.10., '14.03.) 수립 등 관련 정책 전반에 신뢰성 있는 통계 활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로 확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강화
 - 시설기능보강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
 - * 2014년 복권기금 재원 편입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4,300백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1,894백만원) 등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532호, 공포 2014.3.24., 시행 2015.3.25.) 근거자료로 활용
 - 법률 시행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예정(2015.03.25.)

*** 양육비이행관리원 수행 업무**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제 11 절

금융위원회

1. 전자단기사채 등록현황
2. 코넥스시장 현황
3.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전자단기사채 등록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현재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고 해당 정보를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을 제고
- 조사대상 : 전자단기사채
- 조사사항 :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발행조건,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 잔액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06.19.(관련문서 통계심사과-2018호)
- 작성주기 : 매년
- 관련법령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법률 제10855호, 2011.7.14. 공포, 2013.1.15. 시행, 금융위원회)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전자단기사채 등록 현황 -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발행조건,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 잔액 등	통계개발계획 (금융위원회)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전자단기사채 발행등록 100조원 돌파('14.03.03.)

-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2013.01.15일 제도 시행 이후 2014.02.28일 현재 총 발행건수는 3,843건, 총 발행금액은 100조 6,500억원

□ 2014년 1분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총괄

- 2014년 1분기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을 통한 전자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총 2,343건, 71.1조원으로 전분기(2013년 4분기) 1,468건, 38.5조원 대비 84.7% 증가
- 만기별 발행현황 : 3개월물 이내, 초단기물(7일물 이내) 발행 급증
- 발행회사 업종별 발행현황
 - (증권사) 전분기(8.3조원) 대비 241% 급증한 28.3조원을 발행하였으며, 가장 많은 발행금액을 기록한 업종(전체 발행금액의 39.8% 차지)
 - (카드사·캐피탈) 전분기(11.3조원) 대비 33.6% 증가한 15.1조원 발행
 - (유동화전문회사) 발행금액이 12.2조원으로 전분기(12.8조원) 대비 4.7%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체 발행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33.2%→17.2%)
 - (공기업) 발행금액이 2.3조원으로 전분기(2천억) 대비 1,050% 급증
- 신용등급별 발행현황 : 주로 최상위등급(A1) 발행
 - 최상위등급(A1) 발행금액이 전분기(30.3조원) 대비 108.3% 증가한 63.1조원이고, 전체 발행금액의 대부분을 차지

□ 자료조회 : 증권정보포털 홈페이지(www.seibro.or.kr)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증권사의 콜차입 대체, 초단기(7일물) 전자단기사채 발행 급증

- 자금중개기관의 중개발행 업무 개시 등 콜대체 시장으로 자리매김
 - 자금중개기관의 콜자금 거래 중개 범위에 증권사를 제외*
 - * 증권사가 초단기자금을 콜차입이 아닌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자금중개기관이 자체 시스템 개발과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의 전문(CCF)테스트를 거쳐 전자단기사채 발행 중개* 시스템을 오픈
 - * 인수기관(증권회사)이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일반발행과 달리 자금중개기관이 발행회사와 전문투자자 사이에서 전자단기사채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
- 증권사는 자금중개기관을 통해 초단기 전자단기사채의 투자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동성 위험을 완화
- 초단기물 전자단기사채(만기 7일물 이내)의 MMF 편입한도 완화

2 코넥스시장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조사대상 :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등
- 조사사항 :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 거래량, 거래대금
- 개발개선 요구일 : 2013.04.18.(관련문서 통계심사과-954호)
- 작성주기 : 매일(1일 1회)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 제24636호, 2013.6.21. 공포·시행, 금융위원회)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코넥스 시장현황 - 코넥스 상장 기업 수 - 거래량 및 거래금액 등	통계 개발·개선계획 (한국거래소)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코넥스 주가현황
 - ('14.07.18.) 57개 종목 중 가격이 형성된 종목은 20종목
 - 전일대비 가격 상승 6종목, 하락 11종목, 보합 3종목(→거래형성 16, 기세형성 4)

□ 코넥스 거래현황

- (2014.07.18.) 거래대금 및 거래량은 각각 4.1억원, 93천주를 기록
- 7. 18 현재 시가총액은 12,840억원, 전일 대비 76억원 감소
- (투자자별) 기관 순매도 1.1억원, 개인 순매수 1.2억원

□ 자료조회 : 코넥스시장 홈페이지(www.konex.krx.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상장종목 시세 및 거래현황 등을 통해 코넥스시장 동향 파악

- 투자자 및 상장법인 관련 투자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코넥스시장 이해도 제고에 기여

□ 코넥스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자 신뢰 향상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 확대

- 코넥스(KONEX)시장 홈페이지 오픈

3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청산의무거래·자율청산대상 거래정보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보관·관리를 통한 장외거래의 노출위험 파악 및 적시적인 시장관리 강화
- 조사대상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 조사사항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인가기관 수, 청산대상거래별 청산 계약건수(량)·계약금액, 미결제잔액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3.04.18.(관련문서 통계심사과-954호)
- 작성주기 : 중앙청산소 인가 수 → 인가시, 청산 거래정보 → 매월
- 통계 개발개선 완료('13.07.01.)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 제24636호, 2013.6.21. 공포·시행, 금융위원회)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현황 - 중앙청산소 인가기관 수 - 청산 거래건수(량)·계약금액, 미결제잔액 등	통계 개발·개선계획 (금융위원회, 중앙청산소)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청산 실적

-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금융투자업자간 원화이자율스왑(IRS) 거래 자율 청산이 '14년3월3일 개시 이후 한 달간 청산건수 105건, 청산 명목대금 2조 8,650억원을 기록

- 자율청산에 참가한 회원은 증권사 13곳, 은행 7곳 등 총 20곳으로 전체 회원 35개사 중 절반 이상이 청산에 참가했으며, 은행과 증권사가 거래 상대방인 경우가 전체 청산 거래의 60.8%를 차지했고, 은행과 은행은 26.5%, 증권사와 증권사는 12.7%였음

*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청산 기관(중앙청산소)이 돼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제도다. 금융회사 한 곳이 파산 하더라도 중앙청산소가 대신 결제해 연쇄 파산을 막는 효과가 있다.

□ 자료조회 : (주)한국거래소(www.krx.c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장외파생상품 CCP 의무청산 개시('14.6.30.)

- 의무 청산대상 : 적격 원화IRS(Interest Rate Swap)
- 청산회원 :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로서 원화 IRS 거래실적이 있는 52사(증권24사, 은행28사)

□ 장외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장외거래 내역 및 리스크 규모 등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장위험 관리 가능

□ 국내 CCP 도입을 통해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 방지

- 해외 청산소로의 청산수요 이탈을 막고 글로벌 청산소간 경쟁력 강화

□ G20 합의사항을 이행

- 장외파생상품 규제체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제 12 절

산림청

1.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 통계
3.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함
- 조사대상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조사사항 : 산사태 우려지역의 토사유출·붕괴·침식의 정도 및 산사태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2.4.20.(관련문서 통계심사과-1225)
- 작성주기 : 5년(필요에 따라 매년 보완조사)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
 - ('12) 4,006 → ('13까지) 14,201 → ('14 추가) 10,000
 - ※ '14. 3월말 기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3,052개소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추가('14.3월~12월까지)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개정 (법률 제11351호 2012.8.23. 시행 2012.2.22 일부개정)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산사태 우려지역 현황 - 연도별, 지역별	통계개발개선 계획 (산림청)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산사태 취약지역

- 2012년 인명피해 우려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4,006개소로 이중 산사태 우려지 1,934개소와 토석류 피해 우려지 2,072개소로 조사되었음
-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14,201개소이며, 그 중 산사태 우려지 1,540개소와 토석류 피해 우려지 12,661개소로 조사되었음

□ 자료조회 : 산림청 홈페이지 내 산사태정보시스템(www.forest.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전국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 산사태 방지종합대책 및 연차별 실시 대책 수립
 - 체계적인 산사태 방지를 위해 5년 단위로 종합대책을 수립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전국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2013~2017년)의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중심의 산사태 사전예방 강화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산사태 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및 기반조성
- 산사태 사전예방 평가제도 도입·시행

□ 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산사태 예방지원본부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산사태 현장대응 전담 조직의 신설·확대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운영내실화

□ 산사태 피해 조사체계 개선 및 항구복구 실현

-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피해조사 체계 구축
-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견실한 항구복구 추진

□ 산사태 방지 지원체계 정비

-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분야 연구강화 및 방지기준 선진화
- 산사태 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 산사태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정비

□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방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 실시
 - 사방댐계류보전 : ('13까지) 7,725개소/5,879km → ('14계획) 899개소/584km

□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산사태예측정보 제공
 - 산사태위험예측정보 전국 10개의 권역별 기준강우지수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측 및 예측 강우자료(5km×5km)를 활용하여 산사태위험예측 정보를 산사태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시군구 산지재해담당자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산사태위험지도 제작
 - 산사태위험지도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집중강우 등 산사태유발 요인이 작용할 경우, 산사태 발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험 순으로 1등급(매우 높음), 2등급(높음), 3등급(낮음), 4등급(매우 낮음), 5등급(없음) 등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2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 통계

1 개요

- 조사목적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국내 산림 640만ha 모집단 중 4,000개 고정표본점조사, 연차별 800개 조사
- 조사사항 : 수종별 산림탄소 배출량·흡수량 등
- 개발개선요구일 : 2012.09.25. (관련문서 통계심사과-3018)
- 작성주기 : 매년
-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을 위한 우리나라 주요 산림수종 계수 (6수종×3개)에 대해 국가계수 검증 완료('14.01월)
- 관련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1360호, 2012.2.22. 제정, 2013.2.23. 시행, 산림청)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연간 총 산림탄소 흡수량·배출량 ○ 연간 순 산림탄소 흡수량·배출량	통계개발개선 (산림청)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LULUCF* 전체 흡수량 : 약 43백만CO₂톤
 - (산림지 흡수량) 약 39백만CO₂톤, (습지 배출량) 약 9천CO₂톤,
(초지 및 농경지 흡수량) 약 4백만CO₂톤

* 재적 증가량 : ('10) 2,824만m³ → ('11) 2,832만m³, 벌채량 : ('10) 371,5만m³ → ('11) 421만m³

□ **산림지 부문 흡수량 : 약 39백만CO₂톤**

- (방법) 연간 탄소축적 증가량 - 벌채 등으로 인한 탄소축적 감소량
- (통계) 총배출량(698백만CO₂톤)의 약 5.6%인 39백만CO₂톤 흡수 - 벌채량 증가로 '10년 대비 흡수량 감소('10년 : 약 40백만CO₂톤)

□ **습지 부문 배출량 : 약 9천CO₂톤**

- (개념) 인공담수지에서 담수 이후 10년 동안 토양 탄소 분해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 ※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공표 시 LULUCF분야 주요 산림 6수종 계수 포함 ('14.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 **자료조회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2014년 12월중 종합계획 수립 예정

※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 산림탄소상쇄 시범운영('11~'12년)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3.2월)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마련('13.5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감축에 사용하는 것

□ 탄소흡수원 신규 확보

- 탄소흡수원 신규 확보를 위해 한계농지, 부실초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신규 조림사업 추진
- 새만금, 행정복합도시 등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녹지공간 조성과 아울러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도 조성

3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1 개요

- 조사목적 :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지정을 통해 산림문화자산의 관리정책 수립에 활용
- 조사대상 : 산림문화자산
- 조사사항 : 산림문화자산 유형별 지정 현황
- 개발개선 요구일 : 2009.06.05.(관련문서 통계심사과-1650)
- 작성주기 : 1회
-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08~'10) 실시
- 관련법령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0116호 2010.3.17. 일부개정 2010.9.18. 시행, 산림청)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 유형별, 소재지별, 소유자별, 면적 등	통계개발계획 (산림청)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산림문화자산 지정현황

- 산림문화자산 지정 수는 8개로 지역별로는 서울 1개, 강원 7개이며, 소유자로는 국유 8개로 나타남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산림문화자산 지정은 생태적, 경관적으로 보존가치 큰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도록 함

제 13 절

소방방재청

1. 소방산업 통계조사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소방산업 통계조사

1 개요

- 조사목적 : 자소방산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대상 : 국내 소방산업체
- 조사사항 : 매출액, 영업비용, 수익률,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현황, 연구개발 비용 등
- 개발개선 요구일 : 2013.07.22.(관련문서 통계심사과-1922)
- 작성주기 : 연 1회
- 소방산업 통계조사 실시('13.10.23.~12.28.)
- 관련법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895호, 2013.7.16. 일부개정, 2014.1.17. 시행, 소방방재청)

2 통계 개발개선 요구사항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산업통계 실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산업 사업실적 현황(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 소방산업 시설투자 현황(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설비, 기계장차토자건물취득, 자원조달 현황 - 소방산업 연구개발 현황(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 위탁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등 	통계개발계획 (소방방재청)

3 통계 개발개선 실행결과 자료

□ 사업실적 현황

- 매출액 현황
 - 2012년 소방산업 매출액은 10조 4,624억원으로 나타남
 - 방염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규모의 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소기업의 비중이 특히 큰 업종은 소방 도매 및 소매업으로 매출의 100%가 소기업 해당, 소기업의 매출비중이 가장 작은 업종은 방염업으로 25.7%임
 - 중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소방감리업과 소방 제조업으로 각각 35.3%, 33.7%로 나타남, 가장 작은 업종은 소방 도매 및 소매업으로 0%로 나타남
 - 대기업중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은 방염업으로 50.3%, 소방설계업이 31.2%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남. 가장 작게 나타난 업종은 소방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남
- 영업비용 현황
 - 2012년 소방산업 영업비용은 8조 6,969억원으로 집계됨
 - 방염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소기업의 영업비용 비중이 가장 적은 업종은 방염업 26.9%임
 - 중기업의 영업비용 방염업 39.9%, 소방 제조업 33.9%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며 비중이 낮은 순으로는 소방 도매 및 소매업 0%, 소방설계업 8.4%임
 - 대기업의 비중이 큰 업종은 방염업 33.2%, 다음이 소방설계업 32.4%임

□ 연구개발 현황

-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 전체 2003개 중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315개사의 15.7%로 조사됨
 - 업종별로 소방제조업이 32.8%로 높게 나타남

□ 연구개발 비용

- 소방사업체 전체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약 4억 2,1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시설투자비는 약 2억 700만원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평균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소방공사업(8억 4,500만원),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25억 8,400만원)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시설 투자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소방공사업(4억 4,600만원), 사업체 규모별로는 중기업(7억 5,200만원)이 높게 나타남

□ 소방산업 기술 및 특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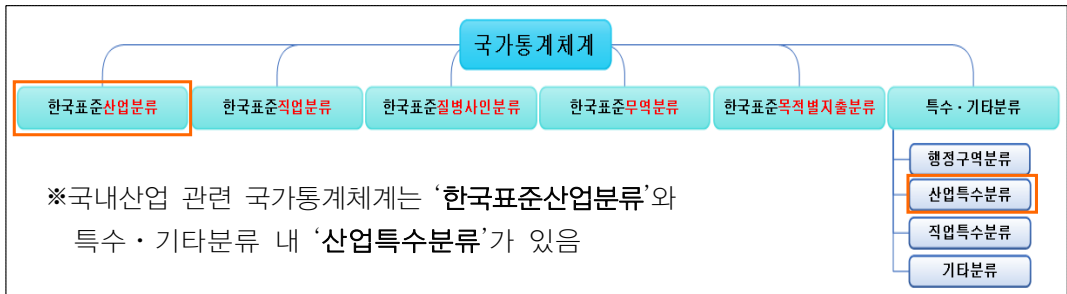
- 국내 산업재산권 전체 등록건수는 1,527건이며, 해외 산업재산권 전체 등록건수는 17건임
 - 국내 산업재산권 등록은 업종별로는 소방 제조업 분야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해외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업종은 방염업 3, 소방 제조업은 14건으로 나타남
 - 소방기업 중 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44개로 전체의 2.2%에 해당함

□ 자료조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

4 구체적 정책활용 사례

□ 소방산업진흥시행계획 수립

- '14년 소방산업 진흥 시책 수립을 위한 소방산업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
 - 매출액 등을 사용
 -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 소방산업의 통계청 산업특수분류 등록('13. 11. 15)



- 소방산업 통계조사 활성화
 - 소방산업 통계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 (단기)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 실시로 통계조사 신뢰성 확보
 - 조사 회신율 향상 및 다양한 분석 자료의 확보 등 통계조사 전문성 강화
 - 2014년도 통계조사 전문기관 위탁사업 예산확보 (1,1억원)
 - * 국가승인통계 지정(통계청)과 연계 추진으로 용역 실효성 확보
- (중장기)통계조사 전담 인프라 확보 후 자체조사 추진
 - 기술원 내에 ‘통계조사실’ 설치(인력, 예산 확보)

- 소방산업 연구·개발 지원
 -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보급 등



부 록

1. 2014년 월별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2.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요(영문)
3. 통계정보 이용방법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2014년 월별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1월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아래 내용은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제 도입
 - 고혈압, 당뇨,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에게 원격 진단 및 처방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 직장 그만 둔 주부에게도 장애·유족연금 보장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전업 주부 등(약 464만명),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및 장애·유족연금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 연 이율 39% ⇒ 연 34.9%(월 3% 이내)
 - ※ 대부업 실태조사('12.12말 기준)
 - ☞ 대부잔액 8조 6,904억원, 거래자수 250.6만명, 건당 평균 대출금액 347만원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 범위 기준 단일화 ☞ 「매출액」으로
 -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으로 용어 변경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국민연금액 인상 ☞ 매년 1월 기준

- 전년도 물가를 반영 4월 인상 ⇒ 1월 인상(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 국공립 어린이집 ☞ 공동주택단지에 우선 설치 의무화

- 취약지역 외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도 우선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실시

- 시장 현황, 국내외 수주 및 매출, 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사업자 임금 실태 등 조사(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설치 운영

- 정보통신망의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관할해역*에서의 과학적 조사 의무화

- 해저지형, 위치, 수심, 해양자원**, 미래 이용가치 등 조사 의무화
* 내수 및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 에너지자원 등
(해양수산부, 국가 관할해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통계 개발·개선 권고 현황(1월)〉

◇ 국가 관할해역 조사

- 해저지형, 위치, 수심, 해양자원, 미래가치 현황 등 국가 관할해역 조사
(해양수산부, 국가 관할해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영해기선실태조사

- 해안선, 도서, 해안침식, 연안개발 현황 등 영해기선(영해기점 무인도서 포함) 및 저조선 조사
(해양수산부, 국가 관할해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관상어산업실태조사

-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관상어어가, 관상어 양식 업체, 관상어 먹이, 수조 등 관련 용품업체, 유통·판매업체, 수출입업체 등 조사
(해양수산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월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 자녀장려금 2015년부터 신청 가능
 - 사업/근로 소득이 있는 자로 부양자녀가 있고,
 -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등인 경우
 -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신청 가능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공무원 직급보조비 ☞ 비과세에서 과세로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문체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

- 결혼이주민 ☞ 대입 기회 확대
 - 해외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입 특별전형 자격 부여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가입비 폐지
 - 농업인·배우자(65세 이상)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도 가입
 - 담보농지 가격 2% 이하의 가입비 징수 ⇒ 폐지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 중견기업 실태조사 실시
 - 중견기업 활동현황, 성장 장애요인 등의 실태조사 매년 실시
 - ※ 우리청에 기 통계작성승인요청(2013. 9.15)하였으나, 유사중복 통계로 검토 및 협의 중(중기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기구 설치**

-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전달기구를 안행부에 설치
(안행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달기구 운영규정 제정)

□ **온라인 금융거래 본인확인 강화**

- 온라인 대출 및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사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가 본인 확인조치를 하여야 함
(금융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공시 의무화**

- 금융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금융위, 은행법 개정)

※ 금융사고 현황 : 2012년 중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84건 747억원*. 이 중 '횡령·유용'이 422억원(142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보도자료 2013.3.12.)

* 금융사고 금액(건) : 횡령·유용 422억원(142건), 배임 150(17), 사기 174(20), 도난·피탈 1(5)

□ **목욕업소 내 밀실설치 금지 강화**

- 목욕업소 내 발한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및 휴식실도 밀실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통계 개발·개선 권고 현황(2월)〉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조사통계)**

- 시장 현황, 국내외 수주 및 매출, 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사업자 임금 실태 등 조사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공영자전거 운영실태 조사(보고통계)**

- 공영자전거 사업 운영여부 및 방식(직영, 위탁), 이용요금 현황, 공영자전거 운영대수, 자전거 대여실적(월별), 대여소의 위치와 개수 등
(안행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월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 지하철 차량내 CCTV 설치 의무화

- 지하철 차량^{*}내에 범죄 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

* '14. 7월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자유업종으로

- 등록제로 운영(미등록시 3년 이하의 징역 등)되던 것을 자유업종으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제한적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류식하수관로^{*} 지역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을 분쇄기 사용가능지역으로 공고

*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하수관로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

□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방향성 제시 등에 대한 연구·심의 (위원장<대통령> 포함 50인 이내로 구성)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행

- 환경부 장관은 2년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금연지도원제 도입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 언론공표 의무화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관명을 게재하여 공표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 여가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 운영주체 변경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로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정)

□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3월 통계 개발·개선 권고 현황 〉

◇ 화학물질 통계조사

-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일반정보, 취급 화학물질 종류·취급량, 수출입량, 취급시설 종류·규모 등 조사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현황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분기별, 지역별, 기종별 등)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4월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 의약품 통신판매 중개·광고 ☞ 금지

- 의약품 통신판매를 중개·광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

□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는 특수판매*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수판매 실태조사 실시
* 특수판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물질약 전문업 신설

- 수도물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급수설비 관리·용역 사업과 절수 설비·기기 설치 사업 등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 ☞ 의무화

- 여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50%로 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 허용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근거 신설

-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낙하산류를 이용하는 비행 포함)활동 관련 사업
(국토교통부, 항공법 개정)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

-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 금지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4월 통계 개발·개선 권고 현황 〉

◇ 성희롱 실태조사

- 국가기관 등(지자체,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 현황, 성희롱 실태(성별·연령별·지역별 등) 등 조사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 「공공기관 남녀차별 및 성희롱실태조사」 : '05년 승인 및 '07년 중지

◇ 청소년 수련시설 사건·사고현황 조사

- 청소년 수련시설 사건·사고 사례(사건사고 건수, 사상자 수 등) 등 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특수판매 실태조사

- 사업유형별(방문, 다단계 등) 대상자 수, 판매원 수, 매출액, 소비자 피해 규모 등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월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켈런, 전자담배에 파이프담배, 엽켈런,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은 담배를 추가

※ 담배에 붙는 공과금은 담배가격(2,500원)의 62.6%(1,564원)

담배소비세 641원(25.7%) + 지방교육세 320원 + 부가가치세 227원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354원 + 폐기물부담금 7원 + 연초안정화부담금 15원

원가 643원(25.7%) + 담배회사 마진 65원 + 판매점 마진 228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 현행 3년 주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등

(중소기업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지역 고졸·대졸자의 지방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기회 확대

- 지방대학 장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한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인원 중 30%(20%)를 지역 고졸자(대졸자)로 선발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지역인재 공공기관 등의 채용확대

-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 지역인재 :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함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지역문화 실태조사** ☞ **매 5년 실시**

- 문체부장관은 지역문화 정책·자원·활동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별 고유 문화 발전에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

□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어장환경평가제 도입**

- 퇴적물내의 유기물, 저서동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장의 자정능력(自淨能力) 한계를 파악하여 어업 면허·허가 갱신에 활용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성매매 예방교육 부실기관**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5월 통계 개발·개선 권고 현황 >

◇ **지역문화실태조사**

- 관련문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정책·자원·활동 등 지역문화현황을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

◇ **장애인실태조사(개선)**

-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장애인실태조사의 완성도 제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 **전문병원 지정병원 현황**

- 시도별·진료과목별 전문병원 수, 병상 수, 의사수(전문의, 일반의 등), 환자 수, 시설 현황 등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군 정신건강 실태조사**

- 병사 및 간부(군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를 조사
(국방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월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1년 연장 → 3년으로
 - 취업심사 대상자(재산등록 의무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20% → 30%
 - '14년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30%로 인상하여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방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에너지이용권 제도 도입
 -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개정)

- 정부3.0 추진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
 - 정부3.0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전략, 의견수렴·반영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3.0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심의
(안전행정부,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 문체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 * 대중문화예술산업 :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

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 **약사 복약지도 하지 않으면 ㉸ 30만원 과태료 처분**

-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

* 복약지도 :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 국가안전처로**

-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모든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안전행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산림탄소상쇄 :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



7월 통계기반 정책평가 주요동향

□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간 3년

- 정보통신서비스업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함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인삼산업 관련 통계조사 실시

- 농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 관련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설

-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환경을 민간 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

* 연구개발서비스업 :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

□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제도 폐지

- 정부 지원 등 실효성이 적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IT업체의 전자무역 참여 활성화 유도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 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자

□ 진술조력인 자격 제도 도입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돕는 진술조력인에 대해 자격 제도 도입 (법무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MBC사장/KBS이사 결격 사유 추가 ☞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등 경우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사무소·연락소·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MBC사장/KBS이사가 될 수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방송법 시행령 개정)

□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 및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시내버스 여객 입석 운행 금지
- 전세버스 내 여객 음주·가무 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및 대열운행 금지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우려가 있는 문구 사용 금지

- 담배 제조사에 라이트(light), 연한,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 담배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문구 사용 금지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 소액채당금 제도 신설

-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액의 채당금*을 지급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

* 채당금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가능

-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7월 통계 개발·개선 권고 현황 〉

◇ 인삼통계조사(보고통계)

- 인삼재배 및 생산현황, 유통·판매·소비현황, 가격현황, 수출입 현황 등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보고통계)

-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연도별· 시도별 직종별 취업자 수 등 활동실태를 파악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Brief Description on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A Objectives and Significance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support offices or departments where new statistics are in need upon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laws by the Central Administration.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obtaining required statistics lies on each department, and Statistics Korea supports the process through policy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atistics Korea examines whether the indicators that a department needs to execute and evaluate newly established or amended laws are fully prepared, and if the improvement plans that each department has designed for its statistics are suitable. Statistics Korea also provides recommendations on necessary statistics to help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work with Statistics Korea to improve and develop their statistics.

The main objective of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 policy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statistics and the policy.

B Focused Organizations and Decrees

1. Focused Organizations

The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applies to eve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2. Decrees for Evaluation

Decrees for evaluation include all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established or amended by the Government with the exception of decrees that do not require statistics as well as decre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where evaluations cannot be reasonably applied. These exceptions are provided annually by the 「Management Principles for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The decrees established the legislative assembly are evaluated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to help corresponding departments obtain necessary statistics.

C Main Evaluation Systems and Procedures

1. Evaluation Systems

As a primary process,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that establish or amend decrees are obligated to request a pre-evaluation or an evaluation from Statistics Korea when seeking analysis from related departments. Statistics Korea conducts evaluations upon the request, and reports the result to each of the departments.

Pre-evaluation is performed to verify if statistics are requir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management, while evaluation is performed to examine how well the necessary indicators have been prepared, whether they are acceptable or not, and to investigate if their improvement plans are appropriate.

1) Pre-Evaluation

Pre-evaluation is a process to verify the necessity of statistics for a new policy that is being established/ amended by the Government. This process reduces the burden from the evaluation conducted by each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The Pre-evaluation process for a decree established/ amended by the Government can be omitted if the necessity of statistics is confirmed in a decree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and can proceed to request an Evaluation.

Upon the result of the Pre-evaluation, an Evaluation is recommended afterwards if statistics are necessary, otherwise the process is finalized. Pre-evaluation results are classified in one of the five categories below.

① Not Appropriate for Evaluation

: the policies implemented based on corresponding decree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Evaluation.

② Remission of Evaluation

: statistics-based evaluation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for the policy, but the newly changed sections in the policy following amendment/establishment are not appropriate for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③ Evaluation during Drafting Process

: when the legislation process needs to be prompt or a policy is required to be specified, the evaluation is recommended to be conducted during the drafting process.

④ Statistical indicators Use Recommended.

: when necessary statistics are properly prepared or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prepared by relevant decrees afterwards, although the policies implemented based on corresponding decrees are an appropriate for Evaluation

⑤ Appropriate for Evaluation

: where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is necessary with a changed policy through the decrees established/amended by the Government.

2) Evaluation

As the core process of statistics-based policy evaluation, the Evaluation verifies how well necessary indicators have been prepared along with the outcome of acceptability and acceptable and how appropriate the improvement plans.

The evaluation result is classified in one of the four categories below.

① Not Appropriate for Evaluation

: the policies implemented based on corresponding decree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Evaluation.

② Statistical indicators Use Recommended.

: when necessary statistics are properly prepared or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prepared by relevant decrees afterwards

③ Statistical Development/Improvements

"Statistical Development/Improvements" is given when there is agreement between Statistics Korea and the corresponding department on statistical development/improvements.

The department submits specific improvement plans to Statistics Korea, and Statistics Korea includes its own plans as one of its medium-range development/improvement project for national statistics.

④ Disagreement on Development/Improvements

If necessary statistics are missing or short, a recommendation fo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elevant statistics is made, especially in cases in which there have been disagreement between the concerned department and Statistics Korea.

In this case, the department is required to attach the evaluation results of Statistics Korea when they report this at a Cabinet meeting.

2. Evaluation Procedure

1) Applic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in charge of amendments are obligated to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for the (Pre)Evaluation and need the request to Statistics Korea, when seeking analysis of amended/newly developed sections with corresponding departments. The application forms must be processed by the staff of the offices of each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 required documents :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form, the following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full text of the decree, description of amended/ newly developed sections, documents containing comparisons with previous contents, and references for related polices.

2) Announcement of Evaluation Results

Statistics Korea is obligated to complete a Pre-evaluation within 10 days after receiving on application, and complete an Evaluation by the end of the announcement period for amendments, then notify the results to the concerned depar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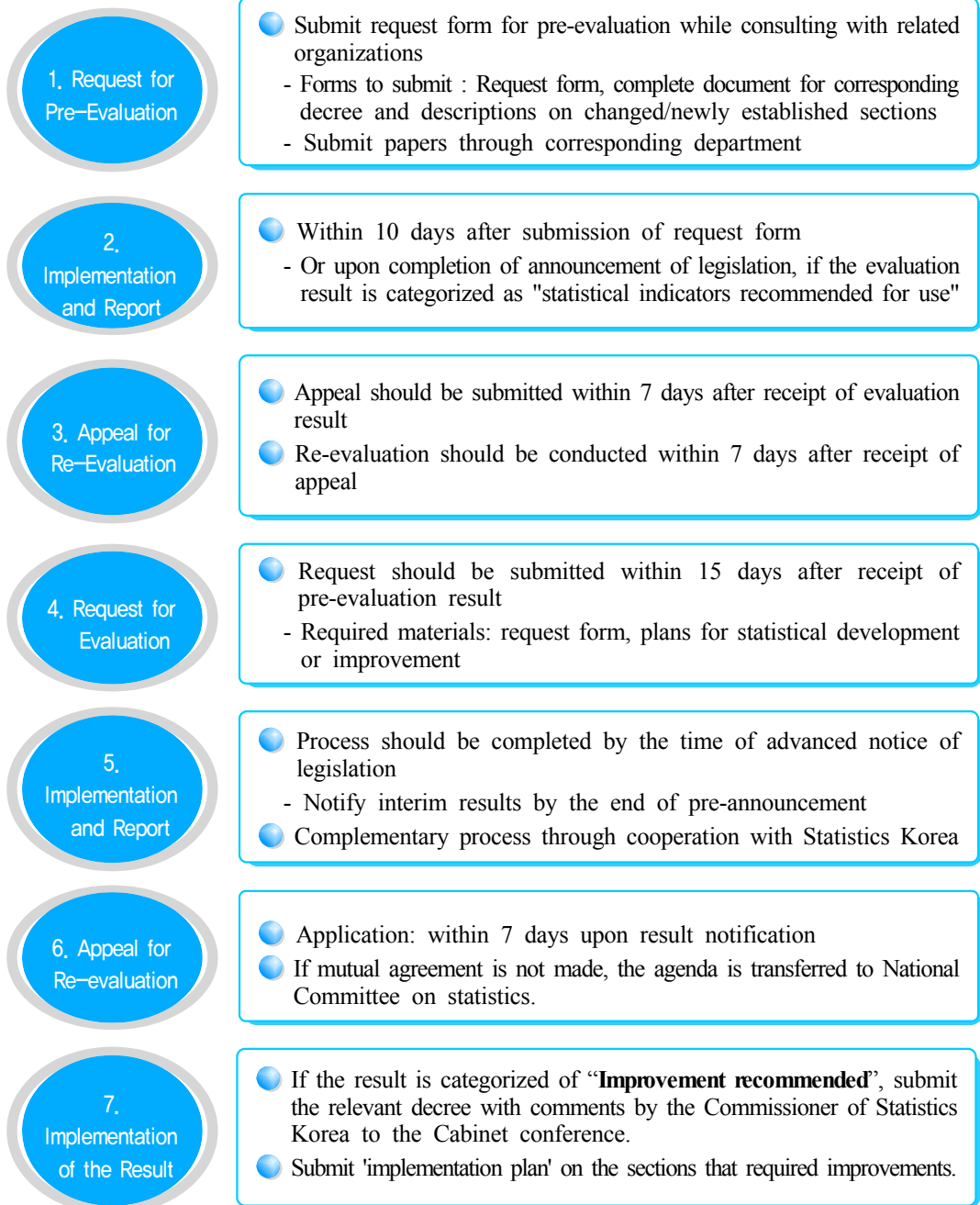
3) Appeal of objections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can bring up objections within 7 days after receiving their assessment results.

In these cases, Statistics Korea conducts a re-evaluation and announces the result to the offices within 7 days for the pre-evaluation and within 20 days for evaluation.



Flow Chart for Evaluation Procedure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3. 통계정보 이용방법

◆ 통계청

- 통계정책시스템(<http://www.narastat.kr/pms/index.do>)
 - 통계정책, 통계심사, 통계조정, 통계품질
- 홈페이지(<http://kostat.go.kr>)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DB자료 서비스 ☎ 042-481-2350
➤ <http://kosis.kr>
 - 어린이 통계동산 초등학교 교과내용의 통계 ☎ 042-481-2318
➤ <http://kostat.go.kr/kids>
 - 통계쇼핑몰 간행물, CD-ROM 구입 ☎ 031-759-0167(205)
➤ <http://kostat.go.kr/shopmall>
 - 통계청콜센터 통계자료 문의 및 안내 ☎ 02-2012-9114 (국번없이 110)
➤ <http://kostat.go.kr> >민원과 소통
- 도서관 (<http://lib1.kostat.go.kr>)
 - 대전도서관 통계자료 열람 ☎ 042-481-2407
간행물 구입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
 - 서울도서관 통계자료 열람 ☎ 02-3446-4428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1층
 - 통계센터 도서관 통계자료 열람 ☎ 042-366-6153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빌딩 4층
- 정보서비스팀 마이크로데이터 ☎ 042-481-2334
 제공 관련 문의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0층

◆ 통계상품 위탁 판매처

- 한국통계진흥원 간행물, CD-ROM 구입 ☎ 031-759-0167(205)
 정기간행물 신청 ➤ <http://www.stat.or.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5(태평1동 6454번지)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4층
- 교보문고 간행물, CD-ROM 구입 ☎ 1544-1900
➤ <http://www.kyobobook.co.kr>
 서울 종로구 종로1
- 경제서적 간행물 구입 ☎ 02-736-0640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4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301동 지하 102호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간행물 구입 ☎ 02-394-0337
➤ <http://gpcbooks.co.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 한국정보서적 간행물 구입 ☎ 02-376-6030
 서울 은평구 수색로 304(수색동)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2013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활용 사례집

발행일 | 2014년 9월
발행처 | 통계청
주 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전 화 | 042)481-2083 (통계심사과)
팩 스 | 042)481-2550

인 쇄 | 강문인쇄사
전 화 | 042)226-4722~3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통계청
STATISTICS KOREA

